

# 外換 및 國際金融 關聯 規制緩和

〈各界의 建議事項에 대한 檢討〉

## 序 言

政府는 國內經濟의 國際化 및 世界化를 추진하고 企業活動의 원활화를 꾀함과 동시에 國民生活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外換의 保有 및 去來와 관련된 規制를 대폭 완화하고 資本流出入과 관련된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外換制度改革計劃을 발표하였다. 또한 발표된 원래의 計劃이 급변하는 國際經濟의 상황변동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規制緩和의 일정을 보다 앞당기려는 修正計劃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政府의 計劃에도 불구하고 財界 및 金融界에서는 國內企業의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外換 및 國際金融과 관련된 規制를 보다 빨리, 보다 큰 폭으로 緩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國內金利가 國際金利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國內企業의 金融費用負擔이 競争國 기업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따라서 國內企業 및 金融機關들은 海外資本의 調達과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本 研究에서는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規制緩和事業의 일환으로 外換 및 國際金融과 관련된 規制緩和에 대한 各界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政府가 발표한 外換制度改革計劃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外換 및 國際金融과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하여 財界 · 金融界 및 기타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收斂하였다. 또한 각계의 建議를 반영하여 실제로 여러 規制들을 완화할 경우 換率 및 通貨管理의 문제점과 輸出, 貿易收支 등에 미치는 影響을 검토하였으며 資本調達이나 換率切上, 物價上昇 등의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이와

간은 檢討를 종합하여 外換 및 國際金融과 관련하여 各界에서 建議한 사항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提示하였다.

WTO體制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 加入 등 國際經濟인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外換 및 國際金融과 관련된 規制를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本 研究의 결과는 이와 관련된 政策의 立案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研究와 報告書의 執筆을 위하여 수고한 本 研究院의 金宗萬 博士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저자는 本 報告書의 草稿를 읽고 여러 가지 유익한 論評과 비평을 아끼지 않은 成均館大學校의 金仁哲 教授와 韓國開發研究院의 姜文秀 博士께 감사드리고 있다. 또한 本 報告書의 原稿 정리를 담당한 廉世羅 研究助員의 수고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에 포함된 내용은 전적으로 研究者 個人의 것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 目 次

I. 序 論 .....	7
II. 政府의 外換 및 資本自由化 計劃 .....	9
1. 經常去來와  관련된 外換自由化 計劃 .....	9
2. 資本去來와  관련된 外換自由化 計劃 .....	11
3. 外換의 保有·去來 및 外換市場에  대한 規制緩和 .....	14
III. 外換 및 國際金融과  관련된 各界의 規制緩和 建議事項 ...	17
IV.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換率 및 經濟에  미치는 影響 .....	20
1. 換率의 決定 및 換率水準에  미치는 影響 .....	21
2. 通貨管理에  미치는 影響 .....	29
3. 換率切上 및 物價上昇  부담의 衡平性 問題와 經濟力 集中의 深化 .....	34
V. 規制緩和 建議에  대한 事項別 檢討意見 .....	37
1. 外貨資金의 調達과 關聯된 事項 .....	37
2. 外貨資金의 用途와 關聯된 規制 .....	43
3. 其他 斷片的인 規制에  대한 緩和建議 .....	50
VI. 要約 및 結論 .....	65
參考文獻 .....	68

# 表 目 次

〈表 1〉 經常去來에 관한 外換規制 緩和計劃 .....	10
〈表 2〉 資本去來와 관련된 外換規制 緩和計劃 .....	12
〈表 3〉 外換 保有·去來의 自由化 및 外換市場 改革方向 .....	15
〈表 4〉 外換 및 國際金融 部門 規制緩和 關聯 各界의 建議事項 要約 .....	18
〈表 5〉 最近 國際收支 推移 및 展望 .....	24
〈表 6〉 經常收支 및 資本收支의 展望이 원/달러 換率에 미치는 影響 .....	27
〈表 7〉 원/달러 換率變動으로 인한 貿易收支 變動效果 .....	28
〈表 8〉 本源通貨管理 및 通貨還收額 展望 .....	30
〈表 9〉 通貨安定證券 發行殘額 및 割引料 展望 .....	32
〈表 10〉 韓國銀行의 收支 展望 .....	33
〈表 11〉 韓國銀行의 收支差로 인한 通貨增加 效果 .....	34
〈表 12〉 外貨資金 調達과 관련된 規制緩和 建議에 대한 檢討意見 要約 .....	39
〈表 13〉 外貨資金 用途와 관련된 規制緩和 建議에 대한 檢討意見 要約 .....	45
〈表 14〉 其他 規制緩和 建議에 대한 檢討意見 要約 .....	51
〈附表 1〉 外換 및 國際金融 關聯 規制緩和 檢討課題 .....	70

# I. 序 論

政府는 WTO體制的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 加入 등에 대비하고 國內企業의 國際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에 外換의 保有 및 去來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資本流出入과 관련된 規制도 점차 緩和하는 내용의 外換制度改革計劃을 발표하였다<sup>1)</sup>. 또한 1995년 11월에는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보다 가속화하는 내용의 修正計劃도 발표하였다<sup>2)</sup>.

外換의 保有 및 去來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換率의 결정이 外換市場의 需給狀況의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하도록 허용할 경우 換率의 短期變動性이 증가하기 때문에 輸出入 등 對外去來에 따르는 外換危險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換率이 적정한 수준에서 큰 폭으로 離脫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國內企業의 輸出競爭力이 약화되고 經常收支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sup>3)</sup>.

또한 國內金利가 國際金利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資本流出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경우 海外資本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國內通貨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外國通貨(美國 달러)로 표시된 우리나라 輸出品의 價格이 상승하기 때문에 輸出이 부진하게 될 우려가 있다<sup>4)</sup>. 海外資本

---

1) 財務部, 『外換制度改革(案)』, 1994. 12. 참조.

2) 財政經濟院, 『外換制度改革計劃 修正方案』, 1995. 11. 참조.

3)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換率의 決定 및 換率水準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金宗萬,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換率에 미치는 影響』, 1995 참조.

4) 換率變動이 우리나라 輸出品의 價格 및 輸出物量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金宗萬, 『換率運用과 輸出競爭力』, 1994 참조.

의 流入으로 인한 國內通貨 가치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中央銀行이 外換을 買入하여 흡수할 경우 通貨供給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通貨管理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政府에서는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날로 격심해지고 있는 國際競爭에 대비하고 國內企業의 世界化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外換 및 資本에 대한 規制緩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자유화 計劃을 앞당겨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財界 및 金融界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外換 및 國際金融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많은 隘路事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글에서는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外換 및 資本自由化計劃의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財界 및 金融界의 建議事項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또한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추진됨에 따라 換率, 輸出 및 通貨管理 등 經濟全般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外換 및 國際金融의 규제완화와 관련된 各界의 要求事項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 II. 政府의 外換 및 資本自由化計劃

政府가 발표한 外換制度改革計劃의 내용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3 단계에 걸쳐서 經常 및 資本去來와 관련된 外換去來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段階別 기간의 구분은 1995년을 第1段階로 하고 1996년부터 1997년까지를 第2段階 및 1998년부터 1999년까지를 第3段階로 구분하고 있다. 分野別로는 經常去來와 관련된 분야와 資本去來와 관련된 분야 및 外換의 保有·去來와 換率制度 및 外換市場과 관련된 분야 등 크게 세 分野로 나누어서 規制緩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각 段階 및 分野別 規制緩和 계획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 1. 經常去來와 관련된 外換自由化計劃

國民生活의 편의를 도모하고 國內企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經常去來 즉 商品輸出入과 外國과의 技術, 用役去來 및 旅行 등 經常去來와 관련된 外換去來는 早期에 완전 自由化하고, 經常去來와 관련된 資本去來는 資本流出入에 대한 規制緩和와 連繫하여 단계적으로 自由化의 폭을 확대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실상 자유화할 예정이다.

第1段階(1995년)에서 經常去來와 관련된 外貨의 支給을 認證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고 實需要證명의 免除範圍를 5천달러 이내로 확대하며, 第2段階(1996~97년) 및 第3段階(1998~99년)에 가서는 實需要證명의 免除範圍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海外旅行經費, 遊學經費, 海外에서 신용카드의 사용 등 國民의 日常生活과 관련된 經費와 海外移住費, 國際機構, 宗教團體, 教育團體

및 體育團體에 대한 贈與性 送金の 한도를 第1段階에서부터 점차로 확대하여, 第2段階 및 第3段階에서는 상당 폭 擴大할 예정이다. 또한 輸出入에 따르는 手數料와 海外事務所의 設置 및 運營費 등 企業의 經費支給은 第1段階에 완전 自由化할 계획이다.

〈表 1〉 經常去來에 관한 外換規制 緩和計劃

	第1段階 (1995年)	第2段階 (1996~97年)	第3段階 (1998~99年)
1. 資金支給 節次 · 支給節次 · 實需要 證明	認證制→申告制 5천달러 이내 免除	免除, 限度 擴大	免除, 限度 擴大
2. 企業經費 · 輸出入 手數料 · 海外事務所 設置經費	自由化 自由化		
3. 個人經費 · 旅行經費	限度 擴大 一般人(留學生): 基本 1萬(5千)달러, 1個月 超過 각 1萬(3千)달러, 定着費 5萬(2萬)달러 限度擴大	限度 擴大	自由化
· 신용카드 使用 · 贈與性 送金 - 國際機構, 團體 宗教, 教育團體 · 海外移住費	自由化 限度 5萬달러로 확대 限度 擴大 世帶主 20萬달러, 世帶員 1인당 10萬달러 投資事業費 50萬달러	限度 擴大 限度 擴大 世帶主 40萬달러, 世帶員 1인당 20萬달러로 확대(1996년)	自由化 限度 擴大
4. 代金決済 · 延支給 輸入	中小企業(大企業) 內需用: 一般地域 120(90)일, 隣近地域 90(60)일 輸出用: 一般地域 180(180)일, 隣近地域 120(90)일로 期間 延長	中小企業: 自由化(用途, 地域 別문 180일)(1997년 중)	大企業: 期間延長
· 輸出 先受金	中小企業: 自由化 大企業: 前年度 輸出 實績의 10%	大企業: 1996년 輸出 實績 15%, 1997년 輸出 實績 20%로 확대	大企業: 輸出 實績 30%로 확대(사실상 自由化)
· 相互計算	自由化		
5. 用役去來	自由化		

資料: 財務部, 『外換制度改革(案)』, 1994. 12, 財政經濟院, 『外換制度改革計劃修正方案』, 1995. 11.

輸入과 관련된 사실상의 資本去來인 延支給輸入의 期間을 第1段階에 中小企業의 경우 60일, 大企業의 경우 30일로 延長하고, 中小企業의 경우 第2段階에 사실상 自由化할 計劃이며, 大企業의 경우에도 第3段階에 延支給輸入의 期間을 점차 延長할 예정이다.

輸出先受金の 領受限度는 第1段階에 中小企業의 경우 自由化하고 大企業은 전년도 輸出實績의 10%까지로 擴大할 계획이며, 第2段階에는 전년도 輸出實績의 20%, 第3段階에 가서는 전년도 輸出實績의 30%까지로 확대하여 사실상 自由化할 계획이다<sup>5)</sup>.

또한 企業間 相互去來를 第1段階에 허용하고 用役去來와 관련된 代金の 支給 및 收受는 第1段階에서 早期에 自由化할 계획이다.

## 2. 資本去來와 관련된 外換自由化計劃

國內金利가 國際金利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資本의 流出入과 관련된 規制를 조기에 완전히 철폐할 경우 海外 資本의 대량 유입으로 인하여 國內通貨의 가치가 상승하고 通貨量이 급증하는 등으로 經濟의 安定基調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政府가 발표한 外換制度 改革計劃에서는 먼저 資本의 流出과 관련된 規制를 대폭 완화하고, 資本流入과 관련된 規制緩和는 國際收支, 換率, 物價 등 巨視經濟의 여건의 變動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5) 海外市場에서의 격심한 競爭 및 우리나라가 輸出하는 製品들의 非價格競爭力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外國의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製品를 先給金を 제공하면서까지 輸入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輸出先受金の 領受限度를 전년도 輸出實績의 20%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제약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輸出先受金 및 着手金 등의 領受限度를 확대할 경우 이들의 형태를 가장한 사실상 資本流入의 규모가 확대되어 國內通貨의 가치가 상승하고 通貨管理가 어렵게 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表 2〉 資本去來와 관련된 外換規制 緩和計劃

	第1段階 (1995년)	第2段階 (1996~97년)	第3段階 (1998~99년)
1. 海外 直接投資	業種制限 縮小 認可金額 上向調整	自由化	
2. 國內 證券投資	株式: 限度擴大 (15%) 債券: 間接投資許容	限度擴大(1996. 10. 20%) 中小企業 無保證 長期債 許容	限度擴大・廢止 無保證長期債 許容
3. 海外 資產運用 · 證券投資	機關投資家: 自由化 一般投資家: 法人 10億원, 個人 5億원으로 限度 확대	一般投資家: 自由化	
· 海外 預金	機關投資家: 1億달리, 一般法人: 1百萬달리, 個人: 年間 3萬달리	機關投資家: 自由化	一般法人 및 個人 自由化(1996~98년)
· 海外 信用供與	外國換銀行: 自由化, 機關投資家: 1千萬달리 一般法人: 30萬달리	機關投資家 및 一般法人: 限度擴大	機關投資家, 一般法人: 限度擴大, 個人 限度設定 許容
· 海外 不動產投資	法人: 限度擴大 個人: 30萬달리	法人: 限度擴大 個人: 限度擴大	法人, 個人: 自由化
4. 證券發行			
· 國內 證券發行	株式發行 許容 國際機構, 外貨債務發行許容	外國企業의 外貨表示債券發行 許容	外貨表示證券 發行 自由化
· 海外 證券發行	施設財導入用, 海外投資用 限度擴大	株式連繫證券 自由化	自由化
5. 金錢貸借, 保證			
· 商業借款	中小企業, 高度技術外國人投資企業, SOC 參與企業의 施設財 導入用 許容(全體 限度 年10億달리)	中小企業: 自由化 一般企業: 限度設定(SOC 參與企業 現金 商業借款 許容)	自由化(一般企業 現金 借款 自由化計劃 없음)
· 現地金融	海外投資, 海外營業用: 自由化	現金借款 自由化計劃(없음)	
· 保證, 擔保	非居住者→居住者: 外國換銀行, 自由化 其他, 制限의 許容 居住者→非居住者: 外國換銀行, 自由化 其他 리스사間에만 許用	自由化(1996) 居住者→非居住者, 非居住者→居住者 모두 自由化(1996년)	
· 外貨貸出	融資對象 확대		融資比率 自由化

資料: 〈表 1〉와 同一

資本의 流出과 관련된 사항으로 海外直接投資는 第1段階에 制限業種을 축소함과 동시에 投資金額을 상향조정하고, 第2段階에 가서는 自由化할 計劃이다.

居住者의 海外證券投資는 第1段階에 機關投資家의 경우 自由化하고 一般法人과 個人의 경우 각각 10億원과 3億원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며, 第2段階에 가서는 一般投資家의 경우에도 自由化할 계획이다.

居住者의 海外預金은 第1段階에서 機關投資家의 경우 1億달러, 一般法人의 경우 1百萬달러, 個人의 경우 30萬달러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第2段階에는 機關投資家의 경우 自由化하고 第3段階에는 一般法人 및 個人의 경우에도 自由化할 계획이다.

內國人的 海外信用供與은 外國換銀行의 경우 第1段階에 自由化하고, 機關投資家와 一般法人의 경우 第1段階에 각각 1千萬달러, 30萬달러 범위 내에서 許容하며 이후 許容限度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海外 不動產投資는 第1段階에 法人의 경우 限度를 확대하고 個人의 경우에도 30萬달러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第2段階에는 法人과 個人의 許容限度를 확대하고, 第3段階에 가서는 自由化할 계획이다.

外國人的 國內證券發行은 第1段階에 外國企業에 의한 國內株式發行과 國際機構의 外貨表示 債券發行을 허용하고, 第2段階에는 外國企業의 外貨表示 債券發行을 허용하며, 第3段階에 가서는 國內에서의 外貨表示 債券發行도 허용할 계획이다.

資本의 流入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外國人的 國內株式 投資限度를 第1段階에 發行株式 總數의 15%로 확대하고 1996년에는 4월과 10월에 각각 18%와 20%로 확대하였으며, 第2段階 잔여기간에는 限度를 더욱 擴大하고 第3段階에 가서는 한도를 廢止하고 自由化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外國人에 의한 國內債券投資는 第1段階에 펀드를 통한 間接投資만을 허용하고 第2段階에는 中小企業이 발행한 長期無保證債券에 한하여 허용하며, 第3段階에 가서는 一般企業의 長期無保證債券에 대한 直接投資를 허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銀行保證 會社債 등 일반적인 國內債券에

대한 外國人의 直接投資는 第3段階에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商業借款의 導入에 관하여서는 第1段階에 海外施設財 導入에 한하여 中小企業, 尖端技術隨伴 外國人直接投資企業, SOC 參與企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第2段階에는 中小企業의 경우 自由化하고 一般企業에 대하여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규모 SOC 投資에 참여하는 企業에게는 現金商業借款의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一般企業에 의한 現金商業借款의 導入은 계속 허용하지 않을 計劃이다.

海外證券發行을 통한 資本導入에 대하여서는 第1段階에 海外施設財 導入을 위한 경우와 海外營業의 資金調達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限度를 확대하고, 第2段階에는 株式連繫 海外證券發行을 自由化하고 第3段階에 가서는 모든 海外證券發行을 自由化할 계획이다.

資本流入과 直接的인 관련이 없는 國內企業의 海外現地法人 등에 의한 現地金融은 第1段階에 海外投資나 海外營業用 資金調達을 위한 경우 自由化하고 第2段階에 가서는 완전 自由化할 계획이다. 또한 外貨貸出에 대하여서는 第1段階에 融資對象을 확대하고 第3段階에 가서는 融資比率를 自由化할 계획이다.

### 3. 外換의 保有·去來 및 外換市場에 대한 規制緩和

外換 및 外換市場에 대한 規制緩和는 外換의 保有 및 去來를 自由化함으로써 企業의 國際營業을 活性化하고, 換率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外換市場의 需給調節技能에 맡김으로써 換率管理로 인한 通貨 및 物價管理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經濟의 安定的인 運用을 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換率制度和 관련하여 第1段階에는 現행의 市場平均換率制度를 유지하되 원/달러 換率의 日間 變動幅을 점차 확대하고, 第2段階에 가서는 先進國型의 自由變動換率制度로 移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外國換銀行制度의 개편과 관련하여 第1段階에서 證券會社의 換錢業務를 허용하고 換錢商의 設置·運營 및 外換去來契約을 自由化할 예정이며, 店鋪設置의 許可基準을 객관화할 방침이다. 第2段階에 가서는 店鋪設置의 許可를 수시로 허용하는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表 3〉 外換 保有·去來의 自由化 및 外換市場 改革方向

	第1段階 (1995년)	第2段階 (1996~97년)	第3段階 (1998~99년)
1. 換率制度	變動幅 확대	先進國型 自由變動 換率制度 移行 檢討	
2. 外國換銀行制度 · 外國換業務 取扱機關 · 外國換銀行業務	證券社 換錢業務 許可 換錢商 設置 自由化 外換去來契約 自由化 店鋪設置 基準 客觀化	隨時認可制度	
3. 外換去來制度 · 外換 포지션	現物換 O/S 限度 확대	綜合 O/B, O/S 現物換 O/S 限度 擴大	
· 先物換, 金融先物去來 實需要 證明	外貨間 先物換: 免除 원貨/外貨間 先物換: 1천만달러 이내 免除 場內金融先物: 免除. 場外金融先物: 2千萬 달러 이내 免除	實需要證明 免除 (1996)	
· 外換集中制	保有自由化 買入(1萬달러)自由化		
· 國內外貨使用 · 對外債權 回收	1천달러 이내 許可 免除限度 擴大 (3萬달러) 海外 外貨保有 許可 輸出實績 1千萬달러 이상: 30% 이내(최 고 3億달러), 海外建 設殘額의 20% 이내 制限의 으로 許可	限度 擴大 限度 擴大(5萬달러) 外貨保有 限度 擴大 輸出實績 50%, 最高 5億달러 海外建設殘額의 30% 이내	限度 擴大 限度 擴大 限度 擴大 또는 自由化
· 非居住者 원貨 預金		外國換銀行 國外店鋪 開設 自由化, 원貨의 海外預金 自由化	
4. 外換市場制度 · 金融先物去來 · 域外金融市場 · 外換브로커 · 원貨의 國際化	規制 緩和 制度 改善 根據 導入 會社 設置 去來對象 擴大	規制 緩和  活性化 擴大	

資料: 〈表 1〉과 同一.

第1段階에 民間의 外換保有를 허용함으로써 外換集中制를 사실상 정지하고 外國換銀行 등 金融機關의 現物換 O/S 포지션과 國內에서의 外貨使用의 허용한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先物換去來 등의 實需要證明에 관하여서는 第1段階에 外貨間 先物換去來를 自由化하고 元貨와 外貨間 先物換去來의 實需要證明 免除範圍를 1千萬달러로 확대하였으며 場內 金融先物去來를 自由化하고 場外 金融先物去來의 實需要證明 免除範圍를 2千萬달러 이내로 확대하였다. 第2段階(1996년중)에 先物換 및 金融先物去來의 실수요증명을 완전히 면제하여 自由化할 계획이다. 또한 海外債券의 回收義務 免除範圍를 점차 擴大하고 輸出企業이나 建設會社들의 海外 外貨保有의 限度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外換市場制度和 관련하여 第1段階에서 金融先物去來와 관련된 規制를 緩和하고 域外 金融市場과 관련된 制度를 改善하며 外換브로커制度의 導入 및 會社의 設立을 추진할 계획이다.

政府의 外換制度 改革計劃을 綜合的으로 檢討할 때 3段階 自由化計劃이 완료되는 1999년 이후에는 經常去來와 관련된 外換의 規制는 거의 완전히 撤廢되고, 外換의 保有 및 去來도 거의 완전히 自由化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海外資本의 大量 流入으로 인한 國內經濟의 攪亂效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에 의한 現金商業借款의 導入과 外國人에 의한 國內債券投資는 제한될 것으로 展望된다.

### Ⅲ. 外換 및 國際金融과 관련된 各界의 規制緩和 建議事項

企業活動의 能率性 및 效率性 提高를 통한 國內企業의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規制緩和 사업의 일환으로 財界 및 金融界의 建議事項들을 정취하였다. 그 결과 外換 및 國際金融 業務에 대한 規制緩和와 관련하여 總 30件의 建議가 접수되었다. 이들 중 서로 다른 機關이나 團體에 의하여 重複建議된 사항들을 統合한 결과 22個 項目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들 항목 중 서로 다른 團體에 의하여 建議된 頻度, 規制緩和의 결과 企業 또는 金融機關들의 競爭力이나 換率, 金利, 通貨量, 物價 등 國家經濟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外貨資金의 調達 및 使用과 관련된 規制緩和에 대한 要求事項들을 受容하기 위한 課題는 核心 課題로 분류하였다.

外貨資金의 調達과 관련된 建議에는 金融機關의 外貨借入, 海外證券發行 企業의 資格, 海外證券發行 限度, 商業借款의 導入 등과 관련된 規制의 緩和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었으며, 外貨資金의 用途와 관련된 建議에는 外貨貸出資金의 用途,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용도 및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를 제한하는 規制의 緩和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

이밖에 外換去來 및 國際金融의 節次나 金融機關들의 海外營業과 관련된 단편적인 規制緩和 建議를 受容하기 위한 課題들은 現場性課題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을 정리한 결과 總 15개 項目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에서는 外換 및 國際金融과 관련하여 各界로부터 접수된 規制緩和

〈表 4〉外換 및 國際金融 部門 規制緩和 關聯 各界의 建議事項 要約

	規制의 種類	規制 項目	提案項目 數
核心課題	1. 外貨資金 調達과 關聯된 規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融機關 外貨借入 規制</li> <li>· 海外證券發行 企業의 資格規制</li> <li>· 海外證券發行 限度 規制</li> <li>· 商業借款 導入 規制</li> </ul>	4
	2. 外貨資金의 用途와 關聯된 規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外貨借入金의 用途 制限</li> <li>·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 制限</li> <li>·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 制限</li> </ul>	3
現場性課題	其他 外換去來와 金融節次 및 金融機關 海外 營業 規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大企業에 대한 外貨貸出 融資比率 限度 制限</li> <li>· 銀行의 中長期 外貨貸出 財源調達 義務比率 規制</li> <li>· 外貨리스 融資比率 限度 規制</li> <li>· 航空機 리스 및 船舶 BBC 資金 使用 限度 規制</li> <li>· 海外直接投資의 自己資本 調達 義務比率 規制</li> <li>· 現地金融의 認證 및 事後管理</li> <li>· 居住者間 外貨決済對象 去來 制限</li> <li>· 金融先物 先物換去來 등의 反對去來 및 取消去來 規制</li> <li>· 원/달러 換率情報 利用 制限</li> <li>· 리스專業社 外貨直接借入 規制</li> <li>· 國內銀行 海外店舖, 營業所 등의 設置 및 移轉과 關聯된 規制</li> <li>· 國內銀行의 海外 現地法人 등에 대한 投資金額 變動에 관한 規制</li> <li>· 僑胞與信에 대한 代支給時 送金에 대한 規制</li> <li>· 換錢商의 設置·運營에 대한 規制</li> <li>· 國內銀行 海外支店의 商業借款 供與 制限</li> </ul>	15

註：規制緩和 建議에 대한 보다 자세한 內容은 〈附表 1〉 참조.

和 建議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그런데 各界의 要求事項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外換 및 資本에 대한 규제들을 즉각 철폐하고 완전히 自由化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에는 換率 및 通貨管理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經濟의 安定基調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각 建議事項의 수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規制緩和의 결과 經濟全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IV. 外換 및 資本自由화가 換率 및 經濟에 미치는 影響

外換의 保有 및 去來와 資本 流出入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國內企業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外資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金融費用이 節減되는 효과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海外資本의 流入으로 인하여 國內金利가 下落할 경우 長期的으로 投資가 증가하고 產業構造의 改善 등을 통하여 國內企業의 輸出競爭力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外國人의 國內株式投資를 허용한 결과 國內證券市場이 활성화될 경우 新株發行이나 企業公開 등을 통한 資金調達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國內企業의 財務構造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外國企業과의 戰略的 提携 등을 통하여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長期間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海外資本이 短期間에 大量으로 유입될 경우 外換의 超過供給으로 인하여 國內通貨의 價値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때 外國通貨로 표시된 우리나라 輸出品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國內企業의 輸出競爭力이 弱화되고 輸出이 不振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

---

6) 우리나라 製造企業들의 경우 他人資本 依存比率이 높기 때문에 金融費用 부담이 다른 나라 企業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 金融費用은 결국 製品價格에 전가되기 때문에 國內企業의 競爭力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1994년 우리나라 製造企業들의 평균 負債比率은 302.5%였다. 이에 대하여 1993년 美國, 日本 및 臺灣 등 주요국 製造企業의 평균 負債比率은 각각 174.5%, 212.5% 및 87.95%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韓國銀行, 『기업경영분석』, 1995 참조.

우 國內에서 生産되는 製品 가운데 해외로 輸出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輸出이 부진하게 될 경우 經濟成長이 鈍化될 우려가 있다. 한편 海外 資本의 流入으로 인한 國內通貨의 가치상승을 저지하기 위하여 中央銀行이 外換의 超過供給을 買入하여 흡수할 경우 通貨가 급격하게 膨脹하여 物價不安을 야기시키는 등 經濟의 安定基調를 해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否定的인 효과는 비교적 短期間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外換 및 國際金融과 관련된 각계의 建議事項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기에 앞서 外換 및 資本에 대한 規制緩和로 인하여 換率, 輸出入 및 通貨 등 주요 巨視經濟變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기로 하자.

## 1. 換率의 決定 및 換率水準에 미치는 影響

換率決定理論에 따르면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진행됨에 따라 外貨 資産에 대한 投資需要의 國內外 金利差에 대한 感應度가 커지기 때문에 미래에 豫想되는 經濟狀況의 변동이나 外國 經濟狀況의 變動 등이 현재의 換率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재에 가능한 政策手段을 동원하여 換率을 적정한 수준으로 管理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7)</sup>.

즉, 外換 및 資本流出入에 대한 規制가 緩和됨에 따라 國內外 金利差나 미래에 예상되는 換率의 變動 등 國內外 債券投資에 대한 期待收益率이 변동함에 따라 資本移動의 方向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未來에 발생할 것으로 豫想되는 經濟狀況의 변동이 現在의 換率에 미치는 영

7) 換率決定理論에 대하여는 金宗萬,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換率에 미치는 影響』, 1995, 第II章의 내용 참조.

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外國의 通貨量이나 金利 등 經濟變數의 變動으로 인한 換率變動의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政策當局이 現 時點에서 동원 가능한 財政政策이나 通貨政策 등 政策手段을 통하여 미래의 經濟狀況에 대한 期待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또한 外國의 經濟狀況에 영향을 미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황에서는 換率을 적절한 수준으로 管理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sup>8)</sup>. 게다가 外換集中制가 停止될 경우 中央銀行의 外換에 대한 獨占力이 약화되기 때문에 外換市場 개입을 통한 換率調整의 효과도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換率의 短期變動性이 커지게 되면 輸出, 海外投資, 海外借入 등에 따르는 外換危險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輸出에 따르는 外換危險 부담의 증가는 國內企業의 輸出競爭力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또한 換率이 때때로 經常收支를 均衡시키는 적절한 水準으로부터 큰 폭으로 離脫할 수 있기 때문에 經常收支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게다가 經常收支의 변동으로 인한 換率變動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經常收支가 赤字를 기록하더라도 資本收支가 黑字를 기록할 경우 國內通貨의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換率이 적절한 水準으로부터 離脫한 상황이 長期間 지속되어 慢性的인 經常收支 赤字狀況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國內金利는 國際金利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와 같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資本流出入에 대한 規制

8) 外換 및 資本에 대한 規制가 거의 완전히 철폐된 주요 선진국 通貨間 換率을, 예를 들면 엔/달러 換率이나 마르크/달러 換率,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9) 換率의 短期變動性 증가로 인한 外換危險의 증가와 輸出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金宗萬,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1990 참조.

가 緩和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海外資本이 國內로 流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海外資本의 流入으로 인한 外換供給의 증가는 國內通貨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國際收支 살펴보면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外國人의 國內株式에 대한 直接投資를 허용하기 시작한 1992년부터 資本收支가 계속 黑字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經常收支가 199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赤字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綜合收支는 매년 黑字를 기록하였다. 특히 1995년의 경우에는 資本收支의 黑字規模가 135億달러에 달하였기 때문에 經常收支가 88億달러 赤字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綜合收支는 31億달러 黑字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6년의 경우 半導體 등 우리나라 주력 輸出品의 國際價格이 下落하였음에 대하여 原油, 農產物 등 주요 輸入商品의 國際價格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交易條件이 상당히 惡化되었다<sup>10)</sup>.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貿易收支는 약 105億달러 赤字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經常收支는 약 171億달러 赤字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하여 長·短期 資本收支는 약 136億달러 黑字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綜合收支는 약 46億달러 赤字를 기록하여 外換의 超過需要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輸出入의 季節性を 감안할 때 1996년 4/4分期중 貿易收支 赤字幅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1)</sup>. 이 점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貿易收支 赤字가 120億달러에 이를 것으로 가정할 경우 經常收支는 약 190億달러 赤字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96년 말까지 資本收支는 약 160億달러 黑字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誤差 및 漏落을 포함하여 綜合收支는 약 42億달러 赤字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10) 1996년 7월중 우리나라의 交易條件은 1995년 7월에 비하여 약 9.3% 惡化되었다.

11) 實證分析의 결과 우리나라의 輸出物量은 매년 4/4分期에 가장 많고 輸入物量은 1/4分期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金宗萬, 『換率運用과 輸出競爭力』, 1994 참조.

〈表 5〉 最近 國際收支 推移 및 展望

(單位: 億달러)

	實 績				展 望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9月末 까지			
經常收支	-45.3	3.8	-45.3	-88.2	-190	-170.9	-130	-75	-40
貿易收支	-21.5	18.6	-31.5	-47.5	-120	-104.8	-60	0	40
貿易外收支	-23.8	-14.8	-13.8	-40.7	-70	-62.5	-70	-75	-80
資本收支	83.4	68.8	90.2	135.3	160	136.3	170	180	190
長期資本收支	72.3	89.0	58.6	79.0		81.6			
短期資本收支	11.1	-20.2	31.6	56.3		54.7			
誤差 및 漏落	10.8	-7.2	-16.7	-16.4	-12	-11.6	-	-	-
綜合收支	49.0	65.4	28.2	30.8	-42	-46.2	40	105	150

註: 貿易外收支에는 移轉收支 포함.

資料: 實績値는 韓國銀行, 『조사통계월보』.

國內金利가 國際金利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外換 및 資本自由化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海外資本의 流入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1997년부터 資本收支의 黑字規模가 매년 10億달러씩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1999년에는 190億달러에 이를 것이다<sup>12)</sup>.

이에 대하여 여러 機關들이 예측한 결과를 종합할 때 經常收支 赤字規模는 1997년에 130億달러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같은 해 綜合收支는 약 40億달러 黑字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1998년과 1999년에는 經常收支의 赤字規模가 각각 75億달러와 40億달러로 축소되는 것

12) 海外資本 流入의 추이를 고려할 때 실제 資本收支 黑字規模는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으로 가정할 경우 綜合收支의 黑字規模는 각각 약 105億달러와 150億달러로 확대될 것이다.

外換 및 資本自由化 3段階 計劃이 完了되는 1999년까지 經常收支 및 資本收支가 <表 5>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고 이로 인한 外換需給의 변동이 換率 및 通貨管理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하여 먼저 外換의 超過供給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國內金利가 國際金利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外換保有에 대한 規制를 緩和하더라도 民間이 保有하기 위한 外換需要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sup>13)</sup>. 따라서 綜合收支 黑字로 인한 外換의 超過供給을 中央銀行이 買入하여 흡수하지 않을 경우 계속 國內通貨의 價値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元貨의 가치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다. 元貨 價値의 계속적인 상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中央銀行이 外換의 超過供給分을 買入하여 吸收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本 研究에서는 外換의 超過供給이 발생할 경우 전액 中央銀行이 買入하여 흡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sup>14)</sup>.

원/달러 換率 및 엔/달러, 마르크/달러, NT달러/美달러 등 주요 換率의 變動要因을 實證的으로 분석한 결과를 감안하여 <表 5>에서와 같은 經常收支 및 資本收支의 상대적인 변동으로 인한 원/달러 換率의 변동효과를 추산한 결과는 <表 6>에 정리되어 있다<sup>15)</sup>.

13) 去來費用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民間이 外貨預金形態로 外換을 보유할 경우 收益率은 國際金利와 같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元貨預金에 대한 利率은 國內金利와 같기 때문에 國內金利가 國際金利에 비하여 높은 상황에서는 外貨預金을 보유할 경우 國內外 金利差만큼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14) 中央銀行이 外換의 超過供給을 전액 매입하여 흡수하더라도 이로 인한 원/달러 換率의 下落效果가 資本收支 黑字로 인한 上昇效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수 있다.

15) 원/달러, 엔/달러, 마르크/달러 및 NT달러/美달러 換率의 變動要因을 實證的으로 분석한 결과는 각각 金宗萬,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換率에 미치는 影響』, 1995, p. 160.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4/4分期중에는 資本 및 經常收支의 상대적인 변동으로 인한 원/달러 換率의 변동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sup>16)</sup>. 그러나 1997년에는 資本收支 黑字로 인한 원/달러 換率의 下落效果가 약 6%임에 대하여 經常收支 赤字로 인한 원/달러 換率의 上昇效果는 약 5.2%이고, 外換의 超過供給을 中央銀行이 買入하여 吸收할 경우 이로 인한 원/달러 換率의 上昇效果는 약 0.4%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와 같은 下落 및 上昇效果를 종합할 경우 같은 해에 원/달러 換率は 약 0.5% 下落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같은 表에서 1998년과 1999년에는 원/달러 換率의 하락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海外資本의 流入의 증가로 인하여 資本收支의 黑字規模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원/달러 換率의 下落效果는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약 6.7%와 6.9%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대하여 經常收支 赤字로 인한 원/달러 換率의 上昇效果는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약 2.7%와 2%이고 中央銀行의 外換市場介入으로 인한 원/달러 換率의 상승효과는 1998년과

---

〈表 V-5〉, p. 54, 〈表 III-3〉, p. 65, 〈表 III-4〉, p. 72, 〈表 III-5〉 참조. 〈表 5〉에서 추산한 經常收支와 資本收支의 전망치가 원/달러 換率에 미치는 變動效果는 앞으로 資本自由化가 추진됨에 따라 資本收支의 變動으로 인한 換率變動의 효과가 점차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규모의 經常收支 效果에 대비한 資本收支 效果의 비율을 1996년에는 0.7로 하고 1997년부터 매년 0.1 포인트씩 가산하여 1999년에는 經常收支와 資本收支의 효과가 같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換率과 경상수지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表 5〉에서 展望한 經常收支 및 資本收支로 인한 원/달러 換率의 變動效果를 추산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원/달러 換率變動이 輸出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經常收支의 變動效果를 산출한 결과를 이용하여 다시 換率變動의 효과를 산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換率과 經常收支가 각각 收斂하는 점을 구하였다. 이와 같은 추산의 결과 資本收支 黑字에서 經常收支 赤字를 제외한 外換의 超過供給은 中央銀行이 買入하여 흡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16) 〈表 5〉에서 1996년 4/4分期중 資本收支 黑字가 經常收支 赤字에 비하여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表 6〉에서 같은 기간에 원/달러 換率이 上昇(원貨 가치 下落)하는 것으로 추산된 이유는 같은 규모의 經常收支 赤字로 인한 원/달러 換率의 上昇效果가 資本收支 黑字로 인한 下落效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1999년에 각각 약 1%와 1.1%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와 같은 변동효과를 종합하면 원/달러 換率은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약 3%와 3.8% 下落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 결과 3段階 自由化計劃이 완료되는 1999년 말에는 원/달러 換率이 1달러당 760원 내지 770원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表 6〉 經常收支 및 資本收支의 展望이 원/달러 換率에 미치는 影響

(單位: %)

	1996 10~12月	1997	1998	1999
資本收支效果	-0.77	-6.04	-6.67	-6.91
經常收支效果	+0.93	+5.15	+2.68	+1.97
中央銀行介入效果	+0.01	+0.41	+1.02	+1.13
換率變動效果計	+0.17	-0.48	-2.97	-3.81

註: 원/달러 換率變動의 要因을 實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엔/달러, 마르크/달러 換率變動의 要因을 分析한 결과를 참고하여 추정하였음. 國際收支 展望値는 〈表 5〉를 기준으로 원/달러 換率變動으로 인한 貿易收支 惡化效果를 감안하여 推定하였음.

원/달러 換率이 下落할 경우 國內企業의 輸出競爭力이 약화되고 貿易收支가 惡化될 것으로 판단된다. 筆者의 다른 연구에서 파악된 원/달러 換率의 변동이 輸出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원/달러 換率이 〈表 6〉에서와 같이 下落할 경우 輸出入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는 〈表 7〉에 정리되어 있다<sup>17)</sup>.

이 表에서 원/달러 換率이 下落하더라도 J曲線效果로 인하여 1998년까지는 輸出 및 貿易收支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17) 원/달러 換率의 변동이 輸出入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서는 金宗萬, 『換率運用과 輸出競爭力』, 1994 및 『우리나라 換率制度의 改編方向』, 1996 참조.

〈表 7〉 원/달러 환율變動으로 인한 貿易收支 變動效果

(單位: 億달러)

	1996 10~12월	1997	1998	1999	2000	2001
輸 出 金 額	+0.1	+0.1	+4.1	-0.6	-24.4	-54.3
輸 入 金 額	0.0	-0.6	+0.2	+4.5	+9.4	+8.6
貿 易 收 支	+0.1	+0.7	+3.9	-5.1	-33.8	-62.9

註: 〈表 6〉에서 推定한 원/달러 환율變動으로 인한 輸出入金額의 變動效果를 推定한 結果임.

다<sup>18)</sup>. 그러나 1999년에는 輸出이 약 6千萬달러 감소하는 데 대하여 收入은 약 4億 5千萬달러 증가하기 때문에 貿易收支는 약 5億 1千萬달러 惡化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원/달러 환율下落이 輸出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悪影響은 2000년부터 보다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으로 인하여 달러貨로 표시된 輸出價格이 상승할 경우 輸出物量은 약 3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1999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下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2000년과 2001년에는 輸出이 각각 약 24億달러, 54億달러 감소하게 되고 收入增加를 포함한 貿易收支의 悪化效果는 각각 34億달러와 63億달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經常收支의 均衡은 2000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8) 1997년과 1999년에는 輸出金額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의 下落으로 인한 輸出價格의 上昇效果가 輸出物量의 減少效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 2. 通貨管理에 미치는 影響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外換集中制를 실시하고 中央銀行이 外換의 超過供給을 매입하여 흡수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通貨가 海外部門을 통하여 공급되었다<sup>19)</sup>. 한편, 中央銀行이 外換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급된 通貨를 通貨安定證券을 발행하여 還收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利子支給의 규모가 매년 막대한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1995년 말 현재 通貨安定證券의 發行殘額은 약 25兆 8千億원에 달하였으며<sup>20)</sup> 같은 해 通貨安定證券 發行割引料는 약 2兆 5千億원이었다<sup>21)</sup>. 通貨安定證券 發行殘額의 증가는 金利下落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通貨安定證券 發行割引料 지급액의 증가로 인하여 中央銀行의 收支가 악화되고, 通貨가 자동적으로 膨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海外流出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海外에서 대규모의 資本이 유입될 경우 通貨管理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表 5>의 國際收支 전망치에서 <表 6>에서 추정된 원/달러 換率下落으로 貿易收支가 변동하는 효과(<表 7>)를 감안한 후 綜合收支 黑字로 인한 外換의 超過供給을 中央銀行이 買入하여 흡수할 경우 海外部門에서 공급되는 本源通貨의 규모는 <表 8>에 정리되어 있다.

이 表에서 1996년 4/4分期에는 經常收支가 계속 赤字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資本收支가 黑字를 기록하더라도 海外部門에서의

19) 韓國銀行의 統計에 따르면 1995년 말 우리나라의 本源通貨(通貨+銀行의 支拂準備預金) 總額 약 29兆 3千億원 중 海外部門을 통하여 공급된 금액은 약 25兆 4千億원이고 國內部門을 통하여 공급된 금액은 약 3兆 9千億원이었다. 그런데 海外部門에서 공급된 것으로 집계된 금액에는 실제로 通貨供給이 수반되지 않고 海外資産이 증가한 海外資産 運用收益 약 6兆 2千億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995년 말까지 海外部門에서 공급된 本源通貨 總額은 약 19兆 2千億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20) 韓國銀行, 『조사통계원보』 참조.

21) 韓國銀行, 『연차보고서』, 1995년도 제46차 참조.

〈表 8〉 本源通貨管理 및 通貨還收額 展望

(單位: 10億원)

	1996 10~12월	1997	1998	1999
本源通貨 增加要因				
海外部門	763	33,844	8,843.7	10,462.9
國內部門 <sup>1)</sup>	7,500	30,000	3,000.0	3,000.0
本源通貨 增加要因 合計	8,263	63,844	11,843.7	13,462.9
本源通貨 管理目標				
年間目標增加率	14%	14%	14%	14%
期初本源通貨殘額	284,732	294,698	33,595.6	38,299.0
增加許容額 <sup>2)</sup>	9,966	41,258	4,703.4	5,361.9
必要還收額	-1,703	22,586	7,140.3	8,101.0

註: 1) 國內部門을 통한 本源通貨 供給額은 매년 3兆원인 것으로 가정하였음.

2) 1996年 4/4分期의 경우 本源通貨 增加許容額을 9월 말 本源通貨 殘額을 기준  
으로 年間 增加許容額 14%의 1/4을 적용하였음.

本源通貨 增加要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經常收支 赤字가 점차 감소함에 반하여 資本收支 黑字는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綜合收支의 黑字規模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海外部門을 통한 本源通貨의 증가요인은 1997년에 약 3兆 4千億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과 1999년에는 中央銀行의 外換買入으로 인한 海外部門 本源通貨 증가요인이 각각 약 8兆 8千億원과 10兆 5千億원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여기에 國內部門을 통한 本源通貨 공급액이 每年 3兆원인 것으로 가정할 경우 本源通貨 增加要因 合計는 1996년 4/4分期는 약 8千億원이고 1997년에 6兆 4千億원,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약 11兆 8千億원과 14兆 5千億원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sup>2)</sup>.

22) 원활한 經濟運用을 위하여서는 國內部門에서도 매년 일정금액의 本源通貨를 공급하

通貨乘數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年間 總通貨(M<sub>2</sub>) 增加率을 14%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本源通貨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本源通貨 增加許容額은 1996년 4/4分期에 약 1兆 원, 1997년에는 약 4兆 1千億원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약 4兆 7千億원과 5兆 4千億원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通貨管理를 위하여 本源通貨의 增加許容額을 초과하는 增加額은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還收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1996년 4/4分期에는 通貨를 환수할 필요가 없지만 1997년에는 약 2兆 3千億원의 通貨를 還收해야 하고 1998년과 1999년중 必要還收額은 각각 약 7兆 1千億원과 8兆 1千億원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 韓國銀行은 本源通貨 增加許容額을 초과하는 通貨增加는 대부분 通話安定證券을 발행하여 환수해 왔다. 이와 같은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表 8>에서 算出한 通貨還收를 위하여 신규로 通話安定證券을 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通貨安定證券 發行殘額은 1997년 말에 약 29兆원에 달하게 되고 점차 증가하여 3段階 外換 및 資本自由化 計劃이 완료되는 1999년 말에는 약 45兆원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通貨安定證券 發行割引料는 1997년에 약 3兆 4千億원에 달하게 되고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약 4兆원, 4兆 9千億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sup>23)</sup>. 이와 같이 通貨安定證券 發行割引料가 급증하기 때문에 買入한 外貨資産의 運用收益을 감안하더라도 韓

---

여야 할 것이다. 韓國銀行의 統計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 동안 國內部門을 통한 本源通貨 純供給額은 약 6,800億원이었다. 이 金額에 海外部門을 통한 本源通貨供給으로 집계된 海外資産 運用收益 약 3兆 7千億원과 國內部門에서 還收한 本源通貨 약 11兆 3千億원을 합산할 경우 실제로 國內部門을 통하여 공급된 本源通貨總額은 약 15兆 6千億원이었던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23) 通貨安定證券 發行割引率은 年 12%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表 9〉 通貨安定證券 發行殘額 및 割引料 展望

(單位: 10億圓)

	1996 10~12월	1997	1998	1999
通貨安定證券 發行殘額				
期初殘額	27,323.0	27,152.8	29,411.4	36,551.7
通貨還收을 위한 新規發行額	-170.2	2,258.6	7,140.3	8,101.0
期末 發行殘額	27,152.8	29,411.4	36,551.7	44,652.7
通貨安定證券 割引料	817.1	3,393.8	3,957.7	4,872.3

註: 1996년의 경우 4월에 단행된 支給準備率 引下로 인하여 放出된 資金을 흡수하기 위하여 2兆 7,400億圓의 通貨安定證券을 추가로 發行하였음. 1996년 11월에 단행된 支給準備率 引下로 인하여 放出된 資金은 總額貸出限度 축소를 통하여 吸收하였음. 通貨安定證券 發行割引率은 年 12%인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通貨還收을 위하여 매년 新規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당해 年度의 割引料는 年間基準 支給額의 절반인 것으로 가정하였음.

國銀行의 收支는 점차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韓國銀行의 純利益은 1995년 약 3,500億圓에서 1996년에는 약 300億圓이 감소할 것으로 推산되며 1997년과 1998년에는 각각 약 2,500億圓과 1,500億圓의 純利益을 기록하게 되나 1999년에는 약 1,000億圓의 純損失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推산되었다(〈表 10〉 참조).

일반적으로 韓國銀行의 純利益은 通貨還收要因으로 작용함에 대하여 純損失은 本源通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韓國銀行의 收益 중 海外資産運用收益은 海外에서 外貨形態로 발생하기 때문에 通貨還收效果를 수반하지 않는다. 또한 韓國銀行의 費用 중 諸充當金轉入額은 計上과 동시에 費用支出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通貨增加와 직접적인 關連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韓國銀行의 收支差로 인한 通貨增加效果를 推산한 결과 1997년에는 각각 1兆 3千億圓,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약 1兆 6千億圓과 2兆 1千億圓에 달하게 될 것으로 推산된다(〈表 11〉 참조).

〈表 10〉 韓國銀行의 收支 展望

(單位: 10億圓)

	1996		1997		1998		1999	
	費用	收益	費用	收益	費用	收益	費用	收益
費 用								
通貨安定證券 割引料	3,262.9		3,393.8		3,957.7		4,872.3	
其他支給利子 割引料	288.5		288.5		288.5		288.5	
支給手數料	50.0		50.0		50.0		50.0	
貨幣製造費	108.7		119.5		131.5		144.7	
管理業務費	188.8		207.7		228.4		251.3	
銀行監督費	35.1		38.6		42.5		46.7	
其他費用	106.9		117.6		129.4		142.3	
收 入								
國內外貨 預置金利子		1,441.0		1,551.4		1,719.5		1,985.0
海外資産 運用收益		1,552.3		1,657.2		1,825.4		2,090.9
國內利子, 割引料 收入		1,011.9		1,191.9		1,371.9		1,551.9
其他收入		64.0		64.0		64.0		64.0
當期純利益	28.3		248.8		152.8			
當期純損失								104.0
合 計	4,069.2	4,069.2	4,464.5	4,464.5	4,980.8	4,980.8	5,795.8	5,795.8

註: 其他支給利子, 割引料, 支給手數料는 매년 1995년과 같은 규모로 發生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貨幣製造費와 銀行監督費 및 特別損失과 外換賣買損을 제외한 其他費用은 1995년 金額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管理業務費는 1995년 金額을 기준으로 매년 1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國內銀行 外貨預託金과 海外資産 運用收益率은 年 5.5%로 가정하였음. 매년 買入한 外貨資産을 國內銀行 預託과 海外資産으로 각각 절반씩 運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매년 買入한 外貨資産의 당해연도의 運用收益은 年間 金額의 50%인 것으로 가정하였음. 國內部門에서 新규모 供給한 本源通貨에서 發生하는 年 收益率은 6%인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當該年度 公積분에 대한 收益은 年間 收益의 절반으로 計上하였음. 特別利益 및 特別費用은 計上에서 除外하였음.

이와 같이 韓國銀行의 收支差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本源通貨도 通貨安定證券을 발행하여 還收할 경우 通貨安定證券의 發行殘額은 1997년 말에 약 31兆圓에 달하게 되고 1998년 말과 1999년 말에는 각각 약 39兆圓과 50兆圓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通貨安定證券 發行割引料가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韓國銀行의 收支는 〈表 10〉에

서 추산한 것보다 더욱 惡化되고 自動的인 通貨膨脹의 요인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表 11〉 韓國銀行의 收支差로 인한 通貨增加 效果

(單位: 10億원)

	1996	1997	1998	1999
當期純損益	-28.3	-248.8	-152.8	+104.0
通貨還收效果가 없는 收入				
海外資産 運用收入	+1,425.4	+1,657.2	+1,825.4	+2,090.9
通貨增加效果가 없는 費用				
諸充當金 轉入額	-90.0	-99.0	-108.9	-119.8
通貨增加效果	1,434.9	1,309.4	1,563.7	2,075.1

註: 韓國銀行의 費用 중 諸充當金 轉入額은 全額 通貨增加效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1995년의 약 818億원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3. 換率切上 및 物價上昇 부담의 衡平性 問題와 經濟力 集中의 深化

海外資本의 導入을 허용하더라도 國際金融市場에서 資金을 직접 調達할 수 있는 國內企業은 일부 財閥들의 看板企業이나 韓電, 浦鐵 등 公企業을 포함한 信用이 良好한 일부 대기업들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利子率이 낮은 海外資本을 조달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金融費用의 부담이 경감됨으로 인하여 競爭力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信用이 良好하지 못한 中小企業 등의 경우 海外資本을 직접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海外資本의 流入으로 인하여 國內金利가 下落하지 않는 한 低金利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海外資本이 유입될 경우 外換의 超過供給으로 인하여 國內通貨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달러貨

로 표시된 輸出品의 價格을 인상하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國內企業의 輸出競爭力이 약화될 것이다. 그런데 海外資本을 조달할 수 있는 企業들은 金融費用이 경감되기 때문에 國內通貨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競爭力 弱화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海外資本을 조달할 수 없는 企業들은 國內通貨 價値上昇으로 인한 부담만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衡平性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海外資本의 流入으로 인한 外換의 超過供給을 中央銀行이 買入하여 흡수함으로써 通貨가 膨脹하고 이로 인하여 國內物價가 상승할 경우에도 유사한 衡平性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國內物價가 상승할 경우 輸出品 生産에 있어서 材料費 負擔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國內企業들은 輸出品의 價格을 인상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海外資本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은 金融費用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材料費 上昇으로 인한 輸出品 價格상승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海外資本을 조달할 수 없는 企業들은 材料費 상승으로 인한 製造原價의 상승분을 輸出價格에 전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輸出競爭力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國內物價가 상승할 경우 모든 國民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衡平性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

國際金融市場에서 海外資本을 조달할 수 있는 國內企業이 제한될 경우 經濟力 集中 문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海外에서 資金을 조달할 수 있는 企業은 信用이 良好한 일부 財閥의 大企業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財閥들은 看板企業을 내세워 海外資金을 조달하고 그룹 내 다른 企業들에게 資金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調達한 資金을 사용하여 事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海外에서 資金을 조달할 수 없는 中小企業이나 信用이 그다지 양호하지 못한 大企業들은 資金不足으로 인하여 事業擴張이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海外資本 流入으로 인하여 海外部門에서 通貨供給이 증가할 경우 通貨管理를 위하여 國內부문 通貨供給의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國內金融市場에서는 資金供給의 규모도 축소

되기 때문에 海外資本을 조달할 수 없는 國內企業들의 資金事情은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中小企業 등은 事業擴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財閥企業들은 海外資本을 조달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음에 대하여 中小企業 등은 資金事情이 더욱 惡化되어 사업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經濟力 集中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國內通貨의 가치가 상승하고 通貨管理가 어려워지는 외에 이와 같은 衡平性 문제와 經濟力 集中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政府에서는 점진적인 規制緩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V. 規制緩和 建議에 대한 事項別 檢討意見

앞에서 政府가 이미 발표한 外換制度改革計劃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또한 外換 및 資本에 대한 規制를 緩和할 경우 換率 및 通貨管理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결과 國家經濟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 보았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여 外換 및 國際金融과 관련된 規制에 대한 各界의 緩和 要求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1. 外貨資金의 調達과 關聯된 事項

外貨資金의 調達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海外資本이 短期間에 大量으로 流入되어 원/달러 換率을 대폭 下落(원貨 價値 上昇)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輸出이 부진하게 되고 通貨가 급격하게 膨脹하여 경제의 安定基調를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外貨資金의 導入과 관련된 規制들을 대폭 緩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外貨資本 導入의 全體 規模는 規制하되 導入의 방법이나 配分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許容節次 등에 관한 規制는 다소 緩和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 金融機關 外貨借入 規制

外換管理規程 第2-56條에는 外國換銀行이 美貨 1千萬달러 이상, 償還期間 1년 초과로 借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資本去來의 申告節次에 따라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申告

日로부터 7일 이내에 財政經濟院長官의 申告受理 또는 變更勸告 여부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申告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財界에서는 이와 같은 規制로 인하여 國內金融市場에서 資金供給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國內金利 높기 때문에 企業의 金融費用 負擔이 과중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金融界에서는 銀行의 中長期借入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短期借入에 의존하게 되어 國際金融市場의 流動性이 梗塞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資產負債管理(ALM)상 안정적인 資金確保에 隘路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財界에서는 外貨資金 調達 및 운영상의 規制를 廢止하고 申告義務도 廢止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金融界에서는 銀行이 借入한 外貨資金은 外貨로 運用되기 때문에 通貨量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지적하고 中長期資金의 借入與否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適期에 所要資金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실제 내용면에서의 申告制가 될 수 있도록 하거나, 事後報告制로 전환하도록 建議하였다. 다만 (海外金融)市場 進出時期(借入時期)의 중복에 따른 借入條件 惡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各 銀行의)市場 進出時期를 조정하는 政府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銀行 등 金融機關이 借入한 外貨資金을 企業의 海外施設財 導入 등을 위한 外貨貸出의 資金으로 운용할 경우 通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運用目的의 外貨借入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貿易 및 經常收支가 惡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1990년부터 貿易 및 經常收支가 赤字로 반전되고 최근 들어 赤字幅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企業의 海外施設財 導入과 連繫된 金融機關의 外貨資金 借入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대폭 緩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뱅크론을 통한 短期資金의 借入은 자유롭게 허용함에 대하여 中長期資金의 借入을 규제할 경우 外換危險이나 金利危險 등으로 인하여 銀行의 安定性을 해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短期 및 長期資金을 합하여 銀行別로 外貨資金을 導入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長·短期 資金의 借入比率 선택은 각 銀行이 自律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外資導入이 일시에 大量으로 몰릴 경우 換率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銀行別 導入時期의 조정은 당분간 필요할 것이다.

## 2) 海外證券 發行企業의 資格에 대한 規制

〈表 12〉 外貨資金 調達과 관련된 規制緩和 建議에 대한 檢討意見 要約

建議事項	檢 討 意 見
1) 金融機關 外貨借入에 대한 規制緩和	· 銀行 등 金融機關의 대규모 外資導入이 換率 및 通貨에 미치는 영향을 緩和하기 위하여  당분간 導入의 時期, 規模 등을 調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대규모 長期 外貨借入에 대한 現行의 申告制는 維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海外證券 發行企業의 資格條件 緩和	· 國內企業의 信用도에 대한 情報가 부족한 外國의 投資家들을 대상으로 CB 등 海外證券을 발행할 경우 發行企業에 대한  객관적인 信用評價가 필요할 것임. 信用이 충분하지 못한 企業이 海外金融市場에 진출함으로써 인하여 다른 國內企業의 信用評價에 미치는 影響과 海外投資家 보호 및 國際紛爭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海外證券 發行企業을 일정등급 이상의 信用을 가진 企業으로 제한할 필요는 있음. 그러나 信用評價 項目에 企業의 資本金이나 收益性, 事業性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信用等級을 制限할 경우 다른 條件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海外證券 發行限度에 대한 規制緩和	· 株式과 連繫된 海外證券(예 : CB)의 發行限度는 外國人 國內株式 投資限度와 連繫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外國人 國內株式 投資限度가 1996년 10월부터 發行株式의 20%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擴大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株式 連繫 海外證券發行의 限度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4) 商業借款 導入에 대한 規制緩和	·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海外資本의 過多流入으로 인하여 國內通貨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通貨가 膨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商業借款 등 海外資金의 導入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商業借款의 導入과 관련하여 기존에 계획된 規制緩和 速度를 維持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으로  판단됨.

一般法人(企業)의 海外證券 發行資格과 관련하여 外換管理規程 第10-79條에는 納入資本金이 100億원 이상이거나 自己資本이 200億원 이상이고 國內에 주된 事務所를 둔 法人 또는 最近 3년간 累積基準으로 當期純利益(法人稅 등 공제 후 純利益을 말한다)을 실현한 法人으로 제한하고 있다. 海外證券發行規程 第3條에는 上場 후 1년 이상 經過한 企業으로 海外信用機關에 의한 信用評價에서 일정한 評點 이상을 획득한 企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海外證券 發行企業의 資格制限에 대하여 財界에서는 海外證券의 價値는 投資者에 의해 市場에서 評價되기 때문에 發行段階에서 信用評價機關의 評價는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信用評價를 함으로써 海外證券을 發行하는 데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費用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景氣變動의 영향을 크게 받는 製造企業이나 冒險企業의 경우 尤망한 事業展望에도 불구하고 景氣不況으로 최근 3년간 累計 當期純利益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海外資金을 起債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信用等級 義務條項을 削除하고 3년 累計 純利益 發生條件을 削除하거나 經常利益 發生條件으로 대체하도록 建議하였다. 政府의 外換制度 改革計劃에 따르면 海外施設財 導入用 資金調達을 위한 경우 第2段階(1996~97년)에 株式連繫 海外證券發行을 自由化하고 第3段階(1998~99년)에 가서는 모든 海外證券發行을 自由化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企業에 대한 情報가 부족한 外國의 일반 投資家들을 대상으로 轉換社債(CB) 등 海外證券을 발행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發行企業에 대한 信用評價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海外證券發行을 自由화하더라도 信用이 良好하지 못한 國內企業이 海外 金融市場에 진출하여 競爭함으로써 國內企業 全體의 海外證券發行 條件을 惡化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信用評價에서 일정등급 이상을 획득한 企業에게만 許容하는 規制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規制는 海外投

資家の 保護 및 國際分爭을 防止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企業에 대한 信用評價에서는 資本金, 純利益, 事業展望 등이 綜合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海外證券發行 企業의 資格基準으로 國際信用評價機關에 의한 評價의 결과 一定等級 이상인 企業에 대해서만 허용할 경우 다른 조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海外證券發行限度 規制

海外證券發行規程 第5條에서는 (株式과 連繫된) 海外證券發行의 限度를 해당종목 發行株式 總數의 15%(1996년 10월부터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發行許容限度를 초과한 경우 許容限度를 차감한 나머지 株式은 無決議權株式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證券業協會의 調整基準에서는 海外證券發行의 限度를 同一法人 2회 이내 年間 3億달러, 同一系列 年間 4億달러 등 發行主體別 限度를 정하여 調整하고 있으며, 財政經濟院에서는 巨視經濟의 여건을 고려하여 海外證券發行의 年間 總額限度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規制에 대하여 財界에서는 年間 發行限度의 制約으로 尖端施設財 導入의 경우 所要資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競爭力 확보를 위한 適期投資가 지연되고(예: 半導體 設備의 경우 16M 生産設備의 구축에 최소한 12~13億달러가 소요된다고 함) 發行規模에 合作社의 持分이 포함되어 실제 발행규모가 줄어들게 된다고 불평하고 있다. 또한 國內 巨視經濟 여건과 國內企業의 資金需要 및 海外金融市場의 與件이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適期借入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資金의 早期確保를 위한 假需要가 발생하기 때문에 企業이 불필요한 金融費用을 負擔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規制緩和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하여 海外證券 發行의 全體限度 및 企業別·系列別 限度規制를 撤廢할 것을 建議하였다.

株式과 連繫된 海外證券의 發行限度는 外國人의 國內株式 投資限度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限度를 撤廢하기는 어려우며 外國人 株式投資의 許容限度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政府의 計劃에 따르면 海外施設財 導入用 資金調達을 위한 경우 第2 段階에 株式과 連繫된 海外證券의 발행을 自由化하고 第3段階에 가서는 모든 海外證券의 발행을 自由化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企業別·系列別 海外證券 發行限度에 관한 規制도 緩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海外施設財 導入을 위한 海外證券發行을 自由化할 경우 經常 收支가 惡化되고 國內 施設財産業이 萎縮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株式과 連繫된 海外證券의 發行限度는 外國人 株式投資 限度와 連繫하여 調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商業借款 導入規制

外資導入法 第19條에 근거한 財政經濟院 商業借款認可指針에는 商業借款의 導入을 公企業, 中小企業, 尖端技術 수반 外國人 投資企業, SOC 參與企業 등의 海外施設財 도입용 資本調達을 위한 경우 制限的(年間 總限度 設定)으로 許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財界에서는 商業借款의 導入이 海外證券發行과 金融機關의 外貨貸出 등 다른 外資調達の 수단과 함께 規制되고 있어서 企業의 尖端施設財 投資財源의 確保가 곤란하기 때문에 글로벌 競爭體制의 構築을 위하여 시급한 國內産業의 長期的인 對外競爭力 확충이 제약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商業借款의 金利 및 附帶費用 등을 감안하면 對外公信력이 있는 企業이 5百萬달러 이상을 조달할 때 實效성이 있으나 中小企業의 경우 外貨資金의 소요규모가 대부분 1百萬달러 이하이고 對外信用度も 떨어지기 때문에 實質的인 導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大企業의 自己信用에 의한 商業借款의 導入을

許容하도록 建議하였다.

外換制度改革計劃에서는 海外施設財 導入을 위한 商業借款의 導入을 第2段階에 中小企業의 경우 自由化하고 大企業의 경우 限度를 설정하여 許容하며 第3段階에 가서는 모든 企業에 自由化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기업에 의한 現金商業借款의 導入은 許容하지 않을 방침이다.

海外資本의 過多流入이 換率 및 通貨管理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분간 商業借款의 導入을 抑制하기 위한 規制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 海外施設財 도입을 위한 商業借款의 導入이 증가할 경우 經常收支가 惡化되고 國內 施設財產業이 萎縮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2. 外貨資金의 用途와 關聯된 事項

企業이 調達한 外貨資金을 元貨로 交換하여 國內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元貨 가치의 상승과 通貨膨脹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外貨資金의 用途를 海外施設財의 導入이나 海外投資 등 對外支給用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外換 및 資本自由化로 인하여 換率이 急激하게 변동하고 國內通貨의 가치가 上昇함으로 인하여 輸出이 不振하게 되며 通貨管理가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外貨資金의 用途制限은 당분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 1) 外貨借入金의 用途制限

外貨與受信業務에 관한 規程 第3條에는 外貨貸出金の 用途를 海外施設財 輸入資金, 計劃造船用 機資材輸入資金, 中小企業 尖端技術 導入費 및 用役費 支給, 海外直接投資資金, 輸出入銀行의 協助融資資金, 施設貸與會社의 海外施設財 導入資金 등 6가지로 制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에 대하여 財界에서는 高金利로 借入한 外債의 早期償還을 위한 用途가 제외되어 企業의 金融費用 負擔이 증가하고 惡性外債

의償還이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日本으로부터 施設財를 輸入할 경우 所要期間과 運送費 등 經費를 切感할 수 있어서 尤리함에도 불구하고 輸入先多邊化政策의 對象品目이기 때문에 融資對象에서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企業의 金融費用 부담을 가중시키고 投資가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基本的으로 用途制限은 Negative System으로 轉換함으로써 원칙적으로 用途規制를 廢止하고, 外債의 早期償還用과 日本으로부터 輸入하는 施設財의 代金を 決濟하는 용도로도 外貨借入資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建議하였다.

海外資本의 大量流入으로 인하여 中央銀行의 對外準備高가 急激하게 증가할 경우 企業들이 惡性外債를 早期에 償還할 수 있도록 特別外貨貸出의 財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對日 貿易逆調가 深化되고 있기 때문에 日本으로부터 輸入되는 施設財의 代金を 決濟하기 위한 外貨貸出을 허용하지 않는 등 輸入先多邊化政策을 쓰고 있으나 그 결과 對日 貿易赤字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데에는 큰 효과를 기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24)</sup>. 輸入先多邊化政策으로 인하여 投資費用과 製品의 生産費가 증가하기 때문에 企業의 競爭力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日本과의 貿易摩擦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外貨貸出에 있어서 日本으로부터 輸入하는 施設財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토록 하는 規制는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 2)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制限

外國換管理規程 第11-7條에는 現地法人 등이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를 現地法人 등이 外國에서의 輸入 또는 輸出에 必要한

24) 『輸入先多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政策研究 92-24, 1992 참조.

〈表 13〉 外貨資金 用途와 관련된 規制緩和 建議에 대한 檢討意見 要約

建議事項	檢 討 意 見
1) 外貨借入金의 用途에 대한 規制緩和	<p>·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推進하는 과정에서 外貨資金의 過多流入으로 인한 國內通貨 價値의 上昇效果와 通貨 膨脹效果를 緩和하기 위하여  당분간 外貨借入金의 用途를 海外施設財의 導入 등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尙료됨. 그러나 이와 같은  規制로  因하여  經常收支가  惡化되는  結果를   초래할  수  있음.  既存의  外貨借入金を  償還하기   위한  外貨資金  借入을   허용함으로써  惡性外債의  早期償還을   통하여  企業이  金融費用을  節減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輸入先多變化政策이  對日  貿易逆調를  개선하는데  크게  공헌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이로  因하여  企業의  投資費用이  增加하고  日本과의  貿易摩擦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日本  施設財  등을  導入하기   위한  用途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p>
2)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에 대한 規制緩和	<p>· 國內企業의 世界化를  추진하고 競爭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現地法人  등이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을  現地에서의  營業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用途를  規制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現地法人  등이  現地金融을  통하여  조달한  資금을  輸出先受金이나  着手金  등  經常去來와  관련된  事實상의  資金去來의  형태로  國內企業에  搬入하는  것은  Negative List를  제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p>
3)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에 대한 規制緩和	<p>·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推進하는 과정에서  海外資金의  過多流入이  換率 및  通貨에  미치는  惡影響을  축소하기  위하여   당분간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를  海外資本財의  도입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海外資本  導入의  結果  換率,  通貨  등  변동의  負擔에  있어서  衡平性 문제를  다소  解消하기  위하여  調達한  資金의  일부를  中小企業  發展債券  購入에  사용토록  하는  規制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기존의  外貨借入금을  償還하기   위한  海外證券의  發行資金의  用途나  日本으로부터  施設財  등을  도입하기   위한  用途에  대한  規制는  廢止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p>

資金, 現地物品 購入에 필요한 資金, 外國에서의 建設 및 用役に 필요한 資金, 遠洋漁撈資金, 外航運送業者 등의 經常運航經費, 現地の 營業活動에 수반되는 販賣費와 一般管理費(製造業의 경우 製造原價 中 勞務費

및 其他經費 포함), 海外不動產 取得資金 및 海外直接投資資金(企業의 引受·合併 推進에 필요한 入札保證金を 포함하며 海外支店 設置資金은 제외), 海外營業活動에 필요한 不動產購入이나 建物建築에 있어서 당해 不動產을 抵當하고 차입하는 建物購入費 및 建築資金, 現地法人의 機械購入 등에 필요한 資金, 海外現地法人 등이 海外建設 및 用役事業 등에 필요한 入札保證金 등, 外航運送業者의 航空機 또는 船舶 등(中古船 제외)의 導入에 따르는 着手金, 기존의 現地金融借入金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등 12개 項目으로 제한하고 있다. 現地法人 등이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를 制限하고 있는 데에는 國內의 本社에 輸出先受金 등 經常去來와 관련된 사실상 資金去來의 방법으로 流入됨으로 인하여 換率 및 通貨管理에 미치는 惡影響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하여 財界에서는 企業活動이 國際化되면서 販賣技法 등 營業環境이 다양화되어 여러 가지 목적의 現地金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現地金融의 用途가 Positive System에 의해 12개 項目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競爭力 強化를 위한 企業資金 需要增大에 對應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日本의 綜合商社 등이 각종 프로젝트성 事業에 入札時 또는 物品販賣時 각종 '商社金融'을 提供하는 데 비해 이들과 競爭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綜合商社들은 상대적으로 競爭力이 弱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制限에 대하여 Negative System으로 轉換하여 원칙적으로 廢止할 것을 建議하였다.

外換制度改革計劃에서는 第1段階에 海外投資 및 海外營業用 現地金融에 의한 資金 調達을 自由化하고 第2段階(1996년)에는 모든 現地金融을 自由化할 예정이다. 그러나 現地法人 등이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을 輸出先受金이나 着手金 등의 형태로 國內의 本社에 搬入시킴으로 말미암아 換率 및 通貨管理에 惡影響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형태의 國內搬入은 Negative List를 통하여 계속 規制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制限

外換管理規程 第10-80條에는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를 (海外)資本財導入資金, 海外投資資金 또는 海外事業資金, 3년 이상 延拂輸出 條件의 完成資本財 生産을 위한 部品導入資金, 最新技術 導入費 및 用役費의 支給, 外貨債務의 早期償還資金, 特定海外市場 開拓 資金 등 6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外貨證券發行規程 第4條에는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에서 外債의 早期償還을 위한 用途가 제외되어 있으며, 資本財 導入의 경우에도 國產化가 불가능한 施設財를 심한 入超國으로부터 도입하는 경우(尖端技術産業用 제외)에는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조달한 外貨資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外國換管理規程 第10-85條에서는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조달한 資금을 指定去來 外國換銀行에 개설된 自己名義의 居住者計定 또는 國內에 本店을 둔 外國換銀行의 外國支店에 개설된 外貨預金計定에 預置하도록 規制하고 있다. 外國換管理規程에 관한 通牒에서는 海外證券發行時 發行金額의 20%를 中小企業發展債券의 買入에 사용토록 義務化하고 있다.

海外證券의 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外貨資금을 일단 國內銀行의 海外支店 등에 예치하였다가 海外施設財 導入 등에 있어서 對外支給用으로 引出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목적은 海外資本의 流入으로 인한 國內通貨 價値의 上昇效果와 通貨增發效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海外證券을 發行할 경우 調達한 外貨資金의 20%에 해당하는 金額의 中小企業發展債券을 매입하도록 義務化하려는 데에는 海外資金의 導入으로 인한 經濟力 集中의 深化效果를 완화하고 國內通貨 價値上昇

의 부담에 있어서 衡平性 問題를 다소 是正하기 위한 目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財界에서는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를 製造業 위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貿易業 및 物物流通業이나 수익성 높은 海外投資를 위한 海外起債가 제한되고, CP 등 短期外貨證券發行資金의 용도에 대한 規程이 없기 때문에 企業의 자체신용에 의한 低利의 短期海外資金 調達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海外證券의 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을 사용하여) 國產代替가 불가능하나 尖端技術 産業用이 아닌 (施設財)경우 日本에서의 輸入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外換管理規程에서 허용한 外債를 早期에 償還하기 위한 用途가 海外證券發行規程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惡性負債償還 목적의 海外起債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을 義務的으로 國內銀行 海外支店 등에 예치토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短期的으로) 高收益 金融商品에 대한 投資가 불가능하며, 海外證券發行 資金의 20%를 中小企業發展債券의 買入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所要資金의 120%를 調達해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金融費用이 발생하게 된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海外證券發行資金의 用途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Negative System으로 轉換하고 規程을 單一化할 필요가 있으며, 海外證券發行規程에 外債早期償還 및 既發行證券을 차환하기 위한 用途를 포함하도록 建議하고 있다.

아울러 海外호텔 및 위락시설 등 海外觀光事業과 貿易業, 物物流通業 등의 海外投資用途를 포함하고 國產代替가 불가능한 施設財로서 尖端技術 産業用이 아니더라도 輸出競爭力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심한 入超國(日本 등)에서의 輸入代金 支給用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建議하였다.

또한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을 일시적이거나 收益性이

높은 곳에 投資할 수 있도록 預置 金融機關과 投資對象 金融商品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海外證券發行時 中小企業發展債券을 義務적으로 買入토록 함으로써) 大企業의 부담을 통하여 中小企業을 支援하기보다는 金融自律化 기반강화를 통한 中小企業 지원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廢止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廢止가 어려울 경우 中小企業發展債券의 買入時期를 海外證券發行日 이후로 조정하여 사후 보고토록 함으로써 海外證券發行의 推進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負擔을 줄이도록 할 것을 建議하였다.

海外證券發行 등을 통한 海外資本 調達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換率의 決定過程에 영향을 미쳐서 換率의 短期變動性이 증가하고 換率이 때때로 적정한 수준에서 큰 폭으로 離脫할 수 있는 등 管理가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海外資本의 流入으로 인하여 國內通貨의 가치가 上昇하게 되고 通貨管理가 어렵게 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짐들을 감안할 때 海外證券發行 資金의 用途를 당분간 制限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既存 外貨負債의 償還資金을 조달하기 위한 海外證券發行은 허용함으로써 惡性負債의 早期償還을 통하여 企業의 金融費用 負擔을 덜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輸入先多邊化政策이 對日 貿易逆調를 개선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企業의 投資費用 增加로 인하여 輸出競爭力이 弱화될 우려가 있으며, 日本과의 貿易摩擦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짐 등을 감안할 때 日本 資本財를 輸入하기 위한 海外證券發行資金의 用途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海外資金의 導入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經濟力 集中의 深化, 換率 切上 負擔의 衡平性 問題 등을 다소 시정하기 위하여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일부를 中小企業發展債券 買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中小企業發展債券의 買入時期를 海外證券發行日 이후로 조정하여 發行의 推進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企業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其他 斷片的인 規制에 대한 緩和建議

#### 1) 大企業에 대한 外貨貸出 融資比率 限度

外貨與受信業務에 관한 規程 第4條에는 銀行의 海外施設財 輸入에 있어서 所要資金에 대한 外貨資金 融資比率를 大企業의 경우 70%, 中小企業의 경우 90%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外貨資金의 融資比率를 제한하고 있는 데에는 通貨管理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目的과 經常收支를 調節하기 위한 目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規制에 대하여 財界에서는 融資比率의 制限과 같은 變更으로 인하여 製造業體의 輸出에 대한 실질적인 支援效果가 적어지고, 資金調達の 豫測性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外貨資金의 融資比率 制限을 폐지하고 外國換銀行이 自律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經常收支가 赤字를 기록하고 있으며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海外資本의 過多流入으로 인하여 換率 및 通貨管理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外貨資金의 融資比率 制限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銀行의 中·長期 外貨貸出 財源調達 義務比率 規制

外貨與受信業務에 관한 細則 第5條에서 銀行들은 3년 이상 滿期의 外貨貸出 殘額에 대하여 50% 이상을 中長期 外貨資金으로 調達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銀行의 安全性을 提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銀行이 長期 外貨貸出의 財源을 조달함에 있어서 短期 外貨借入金 依存比率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金利危險과 外換危險에 露出되기 때문에 金利나 換率이 급격하게 변동함에 따라 銀行의 安全性이 威脅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財界는 國內 金融機關의 信用度 문제와 外貨借入金 規制로 海外資金調達が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規制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銀行의 公共性和 國家經濟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그 安全性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美國 등 先進國의 경우에도 銀行의 安全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資産의 運用이나 財源의 調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金利自由化和 金融自律化 및 資本自由化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金利와 換率의 變動性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銀行들은 資産負債管理(ALM)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長·短期 外貨資金 調達の 比率과 관련하여 外部의 규제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内部規程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함으로써 安全性을 提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銀行의 安全性 提高을 위한 外貨資金 借入比率의 조정은 自體規定에 의하여 自律的으로 시행토록 하고 業務監督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表 14〉 其他 規制緩和 建議에 대한 檢討意見 要約

建議事項	檢 討 意 見
1) 大企業 外貨貸出 融資比率 限度에 대한 規制緩和	· 過度한 經常收支赤字를 방지하고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海外資本의 過多流入으로 인한 國內通貨 價値의 上昇과 通貨 膨脹效果를 緩和하기 위하여 당분간 大企業에 대한 外貨貸出 融資比率를 規制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銀行의 中長期 外貨貸出 財源調達 義務比率 緩和	· 銀行 등 金融機關이 長期 外貨貸出의 財源을 調達함에 있어서 短期 外貨借入金에 依存比率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換率 및 金利變動으로 인한 外換危險과 金利危險에 露出되어 健全性を 위협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健全性を 유지하기 위하여 銀行 등 金融機關들은 스스로 長·短期 外貨借入金의 比率을 조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와 같은 調整은 金融機關들이 自律的으로 시행토록 하고 業務監督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規制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表 14〉의 繼續

建議事項	檢 討 意 見
3) 外貨리스 融資比率 限度 緩和	· 大企業에 대한 外貨貸出 融資比率 限度를 規制하고 있음에 대하여 外貨리스의 融資比率에 대한  규제만 緩和할 경우 銀行과 리스會社간 업무에 있어서 衡平性 問題가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外貨리스 融資比率과 관련하여 現行 規制의 유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4) 航空機 리스 및 船舶 建造用 BBC資金 使用의 限度緩和	·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海外資本의 過多流入으로 換率 및 通貨管理에 미치는 影響을 緩和하기 위하여  당분간 海外證券發行, 商業借款의 導入, 外貨借入, 外貨리스 등에 대하여  規制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衡平性을  기하기  위해서는  航空機 리스나 船舶 建造用 BBC 資金의  사용도  당분간  規制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海外直接投資時 自己資本 調達 義務 比率 등 緩和	· 國內産業의 空洞化를  방지하고 健全한 海外投資를 誘導하기  위하여  海外直接投資를  어느  정도  規制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海外直接投資의  事業性  등에  대한  評價는  企業이  自律的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海外事業의  危險性을  고려할  때  過度한  海外投資로   인하여  國內企業이  不實化되는  것을  방지하기  爲하여  現地法人  등의  現地金融에  대한  支給保證  限度를  自己資本   이내로  제한하는  規制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現地金融의 認證 및 事後管理 緩和	· 現地金融을 保證하는 外國換銀行은 偶發債務을  지게  되고  國內  母企業의  指定去來  外國換銀行은  기존의  貸出金  등에  대한  債權確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現地法人  등의  現地金融을  認證하고  資金의  使用과  償還  등을  인증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이와  같은  업무는  銀行이  自體的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現地金融의  認證이나  事後管理  등은  銀行이  自體規程에  依하여   수행토록  하고  業務  監督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7) 居住者間 外貨決済 對象去來 制限緩和	· 外換集中制가 停止되고 民間의 外換保有가 自由化됨에  따라  居住者間  去來에  있어서  外貨決済을  허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國內去來에  있어서  外貨決済을  전반적으로  허용할  경우  通貨主權을  損傷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8) 先物換去來 및 金融先物去來의 反對, 取消去來 등 規制緩和	· 先物換市場을 活性化시키기  위하여  既存의  先物換契約이나  金融先物契約에  대한  反對 및  取消去來을  사유롭게  허용하여야  할  것임.  實需要  證憑義務는  1996년중에  免除할  예정임.

〈表 14〉의 繼續

建議事項	檢 討 意 見
9) 원/달러 換率情報 利用의 制限 撤廢	· 外換市場을 活性化하고 換率變動에 대하여 企業들이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換率情報의 利用에 대한 制限은 바탕히 폐지되어야 할 것임.
10) 리스會社 外貨資金 直接調達에 대한 規制緩和	· 施設財의 리스기간이 長期間이기 때문에 리스會社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海外리스 物件을 導入하기 위한 外貨資金을 長期借入金으로만 조달토록 하는 규제는  필요할 것임. 그러나 長期 外貨借入의 最小單位가 5百萬달러인 점을 감안하여 5百萬 달러 이내의 短期外貨借入(bridge loan)을 調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11) 國內銀行 海外店鋪 등의 設置 및 移轉에 대한 規制緩和	· 國內銀行의 海外進出에 있어서 迅速性を 기하기 위하여 海外店鋪 등의 設置 및 移轉 등에 대한 認可節次를 簡素化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同一設置地域 내에서의 店鋪移轉은 申告制로 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國內銀行의 現地法人 등에 대한 投資金額 變更에 대한 規制緩和	· 國內銀行의 國際營業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現地法人 등에 대한 投資金額의 變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認可節次를 簡素化하고 小幅增資 등의 경우 申告制로 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僑胞與信에 대한 代支給時 送金에 대한 規制緩和	· 國內銀行의 國際營業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僑胞與信에 대한 保證 또는 擔保提供으로 인하여 代支給을 하게 될 경우 迅速한 送金を 許容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14) 換錢商 設置 運營에 대한 規制緩和	· 換錢商의 設置 및 運營을 自由化할 계획으로 있음.
15) 國內銀行 海外支店 商業借款 供與 許容	· 國內銀行의 國際營業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國內企業에 대한 商業借款의 供與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3) 外貨리스 融資比率 限途規制

外貨리스와 관련하여 財政經濟院 指針에서는 銀行의 外貨貸出 融資比率(外貨與受信業務에 관한 規程 第4條)을 준용하여 海外施設財 도입을 위한 所要資金에 대한 施設貸與 比率의 한도를 大企業의 경우 70%, 中小企業의 경우 100%로 하도록 規制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海外施設財의 導入을 위한 外貨資金의 融資比率과 관련하여 金

融機關間 衡平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外貨리스의 融資比率 한도를 銀行의 外貨貸出 融資比率 한도보다 높게 정할 경우 海外施設財를 導入하기 위한 金融手段으로 外貨리스를 선호하게 되는 등 銀行과 리스會社 사이에 衡平性的 問題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財界는 大企業이 外貨리스를 이용하여 海外施設財를 도입할 경우 所要資金의 30%를 自己資金으로 調達하여야 하기 때문에 施設投資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規制를 廢止하거나 金融機關의 自律運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經常收支와 換率 및 通貨管理를 위하여 外貨貸出의 融資比率 限度를 廢止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다른 金融機關(銀行)과의 衡平性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外貨리스의 融資比率 限度를 廢止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4) 航空機 리스 및 船舶 BBC 資金 使用限度 規制

財政經濟院 指針에서 연간 航空機리스의 사용한도를 8億달러, 선박 BBC 資金의 사용한도를 10億달러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財界는 航空機 導入과 船舶建造에 있어서 (外國)리스資金의 활용과 BBC 資金의 이용이 필수적이나, 이와 같은 資金使用의 허용한도를 작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企業들은 航空機 導入이나 船舶 建造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신형 航空機 및 船舶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外國의 大形業體와의 競爭 및 國內 物流産業의 競爭力 強化를 위하여 이들 資金 이용에 대한 規制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建議를 하였다.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海外資本의 過多流入으로 인하여 換率 및 通貨管理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外貨借入이나 海外證券發行을 통한 海外資金 導入 및 商業借款의 導入 등이 規制되고 있다. 따라서 衡平性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航空機 導入用 海外

리스資金의 이용이나 船舶 建造用 BBC資金 이용의 규모도 당분간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 5) 海外直接投資時 自己資本 調達 義務比率 등 規制

外國換管理法 및 海外 直接投資에 관한 通牒에서 居住者는 海外直接投資時 投資金額의 일정비율을 自己資金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美貨 1億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은 海外投資審議委員會에서 事業性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제하고 있다. 海外直接投資 自己資金 調達の 義務比率는 美貨 1億달러까지는 所要資金의 10%, 1億달러를 초과하는 金額에 대하여서는 所要資金의 20%로 정하고 있다. 또한 系列企業群의 海外直接投資用 資金調達을 위한 現地金融에 있어서 母企業의 支給保證限度를 自己資本의 100% 이내로 한정하고, 사업별 總投資金額의 50%를 초과하여 母會社가 支給保證을 하는 경우 自己資金 支援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財界는 이와 같은 規制로 인하여 海外直接投資에 필요한 資金을 調達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상대적으로 金利가 높은 國內資金으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現地化를 통한 海外尖端技術의 습득, 貿易障壁의 回避 등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企業의 世界化와 競爭力 強化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億달러를 초과하는 事業의 경우 事業性 등의 審議에 長期間이 소요되며, 該當事業에 대하여 專門知識이 걸려된 人士가 審議過程에 참여함으로써 事業推進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못한 判斷을 내릴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海外投資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 支給保證의 규모도 커짐에도 불구하고 母企業의 支給保證 限度를 自己資本의 100% 이내로 制限하고 있기 때문에 現地金融을 통한 資金調達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海外 直接投資에 있어서 自己資金 調達義務와, 1億달러 이상 事業의 경우 海外投資審議委員會의 審議를

받을 義務를 免除하고 系列企業群의 경우 海外投資用 現地金融에 있어서 母企業의 支給保證限度를 撤廢하도록 建議하고 있다.

海外直接投資에 있어서 自己資金 調達義務를 부과하는 등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데에는 복합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지나친 海外投資로 인하여 國內産業이 空洞化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危險性이 높은 海外事業의 실패로 인하여 國內의 母企業이 倒産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國內로 流入되는 資金을 海外로 還流시킴으로써 國內通貨 價値의 上昇效果와 通貨膨脹效果를 다소 緩和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海外事業의 危險性에 비추어 볼 때 海外直接投資에 있어서 慎重을 기하는 것은 필요하나 事業性 등은 企業內部에서 自律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형사업의 경우 海外投資審議委員會의 審議를 받도록 하는 규제는 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나친 海外投資로 인하여 海外事業이 실패할 경우 國內의 母企業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海外 直接投資에 필요한 現地金融에 있어서 母企業의 支給保證限度를 自己資本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規制는 필요할 것이다.

海外直接投資에 필요한 資金의 일부를 自己資本으로 調達토록 하는 규제를 통하여 資本의 海外流出을 유도함으로써 海外資本의 流入이 換率 및 通貨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또다른 衡平性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海外直接投資를 하려는 企業이 海外資金을 도입한 實績이 없는 경우 다른 企業들의 海外資本 導入으로 인한 換率, 物價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分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海外直接投資에 있어서 또 다른 負擔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海外 直接投資에 있어서 自己資本 調達義務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거에 海外資金을 導入한 기록이 없는 企業이나 中小企業 등을 구분하여 비율을 차등화 함으로써 海外資本 導入으로 인한

換率 및 通貨에 미치는 효과를 분담토록 함에 있어서 衡平性 問題를 正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6) 現地金融의 認證 및 事後管理

外國換管理規程 第11-2, 3, 4條에서 居住者, 現地法人 등이 現地金融을 받거나 다른 現地法人을 위하여 現地金融을 하는 경우 당해 現地金融을 保證하는 外國換銀行의 長이나 指定去來 外國換銀行長의 認證을 받도록 規制하고 있으며, 同 規程 第11-16, 17, 18條에는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자금의 사용, 償還 등과 관련하여 支給保證을 한 外國換銀行長 또는 指定去來 外國換銀行長에게 事後管理 報告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規制에 대하여 財界는 現地金融의 認證 및 事後管理 報告를 위한 서류가 과다하여 企業의 業務負擔을 과중시킴과 동시에 資金의 適期 調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國際慣行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企業과 銀行의 節次費用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廢止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建議을 하였다.

現地金融을 保證하는 外國換銀行은 現地法人 등이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을 償還하지 못할 경우 支給義務을 지게 되므로 마땅히 資金의 用途나 使用 및 償還 등 現地金融의 內容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指定去來 外國換銀行은 國內 母企業에게 상당한 규모의 信用을 提供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때 現地法人 등이 現地金融을 통하여 資金을 調達함으로써 인하여 既存의 債權保全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內容을 파악하여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現地金融에 있어서 이를 保證하는 外國換銀行이나 指定去來 外國換銀行의 認證이나 事後管理를 廢止하지는 財界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外國換銀行 등이 마땅히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業務에 대하여 強制規程을 두어 規制함으로써 필요 없

는 規制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現地金融의 認證이나 事後管理 등에 대하여서는 政府가 外國換管理規程과 같은 強制規程 등을 통하여 직접 管理하기보다는 外國換銀行 등이 自體規程에 따라 自律的으로 관리토록 하고 銀行의 業務監督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管理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 7) 居住者間 外貨決濟 對象去來 制限

外國換管理規程 第10-43條에서 居住者間 外貨決濟去來 중 許可 및 申告를 면제하는 去來를 國內信用狀 方式에 의한 居住者間 物品供給契約를 締結하는 경우 등 18個 項目으로 制限하고 있다.

財界에서는 이와 같은 制限으로 인하여 輸入業者가 外貨決濟 輸入品을 國內에서 轉賣할 경우 代金を 元貨로 결제받게 됨에 따라 換錢에 따르는 費用이 발생하고, 換率變動에 따른 外換危險을 부담하게 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居住者間 去來에 있어서 外貨決濟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建議하였다.

外換集中制가 停止되고 民間의 外換保有가 허용될 경우 居住者間 去來에 있어서 外貨決濟를 허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居住者間 去來의 外貨決濟를 허용함으로써 인하여 民間의 外換需要가 증가할 경우 海外資本의 流入으로 인한 國內通貨의 價値上昇과 通貨膨脹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國內去來의 外貨決濟를 전반적으로 허용할 경우 通貨主權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8) 先物換去來, 金融先物去來의 取消 및 反對去來 등 規制

外國換管理規程 第2-54條에서 이미 締結한 先物換去來의 反對去來를 체결하거나 取消할 경우 精算差額は 契約終了時 收受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同 規程 第13-14條에는 기존의 場外金融先物去來의 變更·取消은 實需要去來의 金額 또는 期間 등 去來條件이 變更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先物換去來와 金融先物去來의 反對去來나 取消을 규제하고 있는 목적은 變則的인 去來가 사실상 資金調達의 수단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通貨膨脹의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sup>25)</sup>.

이에 대하여 金融界에서는 先物換契約의 反對去來 및 取消에 대한 規制로 인하여 先物換市場이 活性化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銀行의 입장에서는 原契約의 종료시까지 불필요하게 偶發債務를 표시하게 되어 BIS Rule에 의하여 自己資本 比率를 산정함에 있어서 危險資産으로 算入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財界에서는 場外 金融先物去來에 대한 規制로 인하여 國際金融市場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企業이 換率 및 利子率 變動으로 인한 危險에 신속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既存의 先物換去來에 대한 反對去來나 取消去來 등 變則的인 去來로 인한 通貨增發效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外換 및 資本自由화가 추진됨에 따라 換率의 短期變動性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輸出 등 國際去來에 따르는 外換危險을 管理할 수 있도록 先物換去來의 活性化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때 既存의 先物換去來에 대한 反對去來나 取消去來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外換制度 改革計劃에 따라 金融先物去來의 實需要證憑義務는 1996년중 免除될 것으로 예상된다.

---

25) 外國銀行 등이 國內企業과 損失을 분 것이 확실한(deep out of money) 先物換契約 등을 체결하고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資金貸與를 할 수 있다.

## 9) 원/달러 換率情報 利用 制限

財界는 원/달러 換率의 유일한 仲介機關인 金融決濟院이 銀行間 外換 去來의 市場價格(換率) 告示情報를 銀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企業이 外換市場의 精確한 時勢를 파악할 수 없으며 원/달러 換率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즉각적으로 對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外換市場을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모든 利害當事者들에게 換率情報가 迅速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換率情報의 利用을 제한하는 조치는 마땅히 撤回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0) 리스會社 外貨資金 直接調達 規制

施設貸與會社 業務運用準則 第11條에서 리스專業社의 海外資金 直接調達は 償還期間이 1년을 초과하는 長期資金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리스業界는 海外에서 長期資金 調達の 最小單位가 5百萬 달러이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金額의 海外施設財를 導入함에 있어서 最小單位로 資金을 調達하여 未使用 金額은 다른 施設財를 도입할 때까지 國內銀行의 海外支店 등에 預置하여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때 預置銀行이 支給하는 金利가 資金의 調達金利에 비하여 낮음으로 인하여 逆마진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리스會社의 金融費用 負擔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스會社의 外貨資金 調達到 있어서 일시적으로 5百萬달러 이내의 短期資金(bridge loan)을 調達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施設財導入 代金を 支拂하고 短期借入金의 累積金額이 5百萬달러에 달할 경우 長期資金을 借入하여 償還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建議하고 있다.

리스會社의 外貨資金 直接借入에 있어서 長期資金만을 調達하도록 規

제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施設財의 리스期間이 長期間이기 때문에 海外施設財의 導入 資金을 短期借入金으로 充당할 경우 換率이나 利率이 급격하게 변동함에 따라 外換危險과 金利危險에 露出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會社의 安全性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海外施設財 導入資金을 長期借入金으로 充당하도록 제한하는 規制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리스會社들이 일시적으로 5百萬달러 이내의 短期資金을 借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을 주도록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11) 國內銀行 海外店鋪, 現地法人 등 設置 및 移轉과 관련된 規制

外國換管理規程 第2-23條, 第2-30條, 第2-31條에서 國內 外國換銀行이 海外店鋪나 現地法人 등을 新設할 경우 財政經濟院長官의 認可를 받도록 規制하고 있다. 또한 金融機關監督業務 施行細則 第3條에서는 國內銀行 國外營業所 등의 移轉時 銀行監督院長의 認可를 받도록 規制하고 있다.

이와 같은 規制에 대하여 金融界는 國外店鋪 등의 新設時 銀行監督院의 新設에 대한 意見提示 및 認可, 財政經濟院의 內認可, 本認可 등 복잡한 段階를 거쳐서 年 1회에 한하여 認可되기 때문에 成長有望市場 (Emerging Market)에 進出하는 데 있어서 競爭國의 銀行들에 比하여 迅速성이 떨어지고, 先占의 利得을 喪失하게 된다고 불평하고 있다. 또한 認可窓기가 二元化되어 있기 때문에 書類 준비 등이 중복되어 관련 業務의 번잡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國外店鋪가 貸借店鋪인 관계로 같은 州 또는 市 地域 內에서 移轉하여야 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同一設置地域 內에서의 所在地 變更時 銀行監督院長의 事前認可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規制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國內銀行 海外店舖 등의 設置認可는 外換制度改革計劃에 따라 隨時認可制로 轉換될 예정이다. 同一設置地域 內에서의 店舖移轉은 事後報告制로 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12) 國內銀行의 海外 現地法人에 대한 投資金額 變更에 대한 規制

外國換管理規程 第2-32條에서 國內銀行이 海外現地法人 등에 대한 投資金額 및 投資比率를 變更할 경우 財政經濟院長官의 認可를 받도록 規制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金融界에서는 海外現地の 營業環境(現地法規의 改正, 監督機關의 요청 등)의 變動이나 經營戰略上 現地法人 등에 대한 追加出資가 필요한 경우 適期에 필요한 資金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問題를 시정하기 위하여 최초出資時 50% 이상의 持分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認可制로 하고 50% 미만의 持分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申告制로 하며 追加出資時에는 金額에 관계없이 申告制로 하도록 건의하였다(다만 追加出資로 인하여 持분이 50%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만 認可制로 하도록 建議하였다).

銀行 등 國內 金融機關들이 國際化를 통하여 競爭力을 제고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海外進出 등에 대한 規制를 보다 伸縮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3) 僑胞 與信 등에 대한 代支給時 送金에 관한 規制

外國換管理規程 第6-13條 2項 3號에서는 僑胞與信에 대한 國內 擔保提供 및 保證에 따른 代支給時 韓國銀行 總裁의 許可를 받아야 하도록 規制하고 있다. 그런데 金融界는 韓國銀行 總裁가 실제로 許可를 하지 않고 있어서 對外送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對外送金의 許可權을 下部로 移讓하거나 실질적인 送金이 가능하도록 許可할 것

을 建議하였다.

國內銀行들의 圓滑한 國際營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海外送金을 許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14) 換錢商 設置 및 運營에 관한 規制

外國換管理規程 第3-1條에는 換錢商 認可對象으로서 財政經濟院長官이 정하는 자는 信用卡業者, 大型流通業體, 기타 韓國銀行 總裁가 觀光事業 促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相互信用金庫業界는 海外旅行의 自由化 등으로 換錢에 대한 요구가 擴大되고 있으나 金融機關인 相互信用金庫에게는 換錢商 業務가 제한됨으로서 顧客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相互信用金庫도 換錢商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外換制度 改革計劃에 따라 머지 않아 換錢商의 設置·運營이 自由化 될 것으로 예상된다(外換制度改革計劃에는 第1段階(1995년)중에 自由化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15) 國內銀行 海外支店の 商業借款 供與에 대한 規制

外資導入法 第2條에서 ‘外國人’의 定義에 國內銀行 海外支店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國內銀行 海外支店은 國內 居住者에게 商業借款 등 信用供與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銀行界에서는 國內金融市場의 開放에도 불구하고 國內銀行 海外支店の 營業範圍를 제한함으로써 外國系銀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營業環境을 조성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是正하기 위하여 外資導入法上 外國人の 범위에 國內銀行 海外支店을 포함하여 國內 居住者에게 商業借款의 供與 등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國內銀行 海外支店の 營業能力을 향상시키고 居住者の 金融費用을 줄이도록

建議하였다.

國內銀行 國際營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海外支店 등을 外國人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國內 企業體에 대한 商業借款의 供與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VI. 要約 및 結論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換率 및 通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資本流出入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에는 經常收支가 대규모의 黑字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外換의 超過供給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國內通貨의 가치상승을 저지하기 위하여 海外資本의 流入을 가급적 억제하고 外債의 早期償還을 권유하는 등 資本이 海外로 流出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經常收支가 赤字로 반전되었기 때문에 外換의 超過需要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國內通貨價値의 상승압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海外證券發行 등을 통한 資本導入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外國人의 國內株式에 대한 直接投資도 허용하였다. 그 결과 海外資本의 유입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資本收支가 黑字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經常收支가 赤字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綜合收支는 黑字를 기록하여 國內通貨價値의 上昇壓力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압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中央銀行이 外換의 超過供給을 買入하여 흡수하는 과정에서 通貨(本源通貨)를 방출하였기 때문에 通貨膨脹이 우려되었다. 이로 인한 物價上昇壓力을 저지하기 위하여 通貨安定證券을 발행하여 通貨를 환수하였다. 그 결과 通貨安定證券의 發行殘額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利子(割引料)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여 자동적인 通貨膨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通貨의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政府는 1994년 12월에 1995년부터 1999년까지 3段階에 걸쳐서 外換의 保有 및 去來와 관련된 規制를 철폐하고 資本流出入과 관련된 규제도

점차 緩和하는 내용의 外換制度改革計劃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5년 11월에는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원래의 계획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外換制度改革計劃修正方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外換 및 資本自由化計劃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經濟界 및 金融界 등에서는 外換 및 國際金融과 관련된 規制緩和의 폭을 보다 조속히 확대하도록 建議하고 있다. 各界에서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보다 신속히 추진하도록 建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海外資本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國內金利가 國際金利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企業들이 필요한 資本을 國內에서 조달할 경우 金融費用負擔이 海外에서 조달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다. 게다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國內에서 필요한 資本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國內의 企業 및 金融機關들은 상대적으로 利子率이 낮은 國際金融市場에서 보다 많은 資金을 조달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外換 및 國際金融과 관련된 規制의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海外資本의 조달 및 사용과 관련된 規制를 대폭 완화할 경우 海外로부터 대규모의 資本이 급격하게 유입되어 國內通貨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國內通貨의 價値가 상승할 경우 달러貨로 표시된 輸出品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國內企業의 競爭力이 약화되고 輸出이 부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海外資本의 流入으로 인한 國內通貨의 가치상승을 저지하기 위하여 中央銀行이 외환의 超過供給을 매입하여 흡수할 경우 本源通貨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通貨가 팽창하게 되어 物價上昇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通貨膨脹을 저지하기 위하여 通貨安定證券을 발행하여 外換을 買入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通貨를 還收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通貨安定證券의 發行殘額이 이미 막대한 규모에 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割引料 또한 막대한 규모에 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자본유입으로 인한 外換의 超過供給을 中央銀行이 買入하여 吸收하는

과정에서 放出되는 通貨를 계속 通貨安定證券을 발행하여 환수할 경우 割引料 지급의 규모가 막대한 규모에 달하게 되기 때문에 自動的인 通貨膨脹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海外資本의 導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실제로 國際金融市場에서 資金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信用이 양호한 일부 大企業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企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海外資本을 조달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金融費用을 절약하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海外資本 導入으로 인하여 國內通貨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輸出에 미치는 악영향은 中小企業을 비롯한 모든 國內企業들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衡平性問題가 대두될 수 있다.

게다가 經濟力 集中問題가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 海外資本을 조달할 수 있는 企業들은 投資를 확대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海外資本의 大量流入으로 인하여 海外部門에서 通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國內部門에서 通貨를 還收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中小企業 등은 海外資本을 직접 도입할 수 없고 國內에서도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投資擴大와 事業擴張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海外資本의 導入과 관련된 규제들을 단기간 내에 완전히 撤廢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國內金融機關들의 海外營業과 관련된 規制들이나 資本의 調達 및 使用의 절차 및 海外資本의 流入規模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規制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參 考 文 獻

- 康仁洙 外,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政策研究 92-24, 1992.
- 金圭漢, 『開放化時代의 通貨 및 換率政策』, 研究論文集 94-2, 韓國銀行 金融經濟研究所, 1994.
- 金宗萬, 『國際通貨制度의 改編論議와 우리나라의 對應』, 研究報告書 96-01, 韓國租稅研究院, 1996.
- , 『臺灣의 換率運用과 輸出競爭力』, 研究報告書 93-11, 韓國租稅研究院, 1993.
- , 『우리나라 換率制度의 改編方案』, 研究報告書 96-05, 韓國租稅研究院, 1996.
- , 『外換 및 資本自由화가 換率에 미치는 影響』, 研究報告書 95-03, 韓國租稅研究院, 1995.
- ,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政策研究 93-10,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 , 『主要 換率變動의 特性과 政策示唆點』, 政策研究 91-0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影響』, 政策研究 92-27,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 , 『換率運用과 輸出競爭力』, 研究報告書 94-09, 韓國租稅研究院, 1994.
- , 『換率制度와 外換危險管理』, 政策研究 90-03,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 李天杓, 『經濟自由化, 外換市場 活性化와 通貨管理體制의 改善』, 韓國銀

- 行 調查第1部, 1990.
- 財務部, 『外換制度改革(案)』, 1994.
- 財政經濟院, 『外換制度改革計劃 修正方案』, 1995.
- 曹琮和,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政策資料 94-0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 崔長鳳, 『資本去來 自由化에 따른 效率的인 通貨 및 資本流出入 管理』, 研究報告書 94-01, 韓國租稅研究院, 1994.
- 韓國銀行 調查第1部, 『最近 東아시아 國家의 換率政策 運用現況』, 조사연구자료 96-12, 1996.
- 植田和男, 「最近における爲替レート理論と円 ドルレートの動き」, 『日本銀行 研究報告書』, 1983, pp. 8~26.
- 深尾京司, 「爲替レートの 決定要因と 爲替投機需要」, 『日本銀行 研究報告書』, 1983, pp. 27~66.
- Bordo, M. D. and A. J. Schwartz, “What Has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since the Plaza Agreement Accomplished?,” *Open Economic Review*, Vol. 2, 1991, pp. 39~64.
- Branson, W. H.,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Real Exchange Risk,” in Herring edited, *Managing International Ris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 33~74.
- Dornbusch, R., “Exchange Rate Economics: Where Do We St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1, 1980, pp. 142~85.
- Friedman, M., “The Case for Flexible Exchange Rate,” in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Friedman Edit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pp. 157~203.
- Mussa, M., “A Model of Exchange Rate Dynam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0, 1983, pp. 74~103.

- \_\_\_\_\_, "Empirical Regularities in the Behavior of Exchange Rate and Theories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11, 1979, pp. 9~75.
- Yoich Funabashi, *Managing the Dollar: From the Plaza to the Louvr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8
- Williamson, J., *The Exchange Rate Syste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5.

〈附表 1〉外換 및 國際金融 關聯 規制緩和 檢討課題

	課題題目	根據規程	規制內容
核心課題	<p>1. 外貨資金</p> <p>導入과 關 련된 規制 緩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融機關 外貨資金 借入規制</li> <li>· 海外證券 發行 資格制限</li> <li>· 海外證券 發行限度 規制</li> <li>· 商業借款 導入 規制</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外國換管理規程 第2.56條</li> <li>- 外國換管理規程 第10.79條, 海外證券發行規程 第3條.</li> <li>- 海外證券發行規程 第5條 財政經濟院 指針 및 證券業協 會 調整基準</li> <li>- 外資導入法 第19 條, 財政經濟院 商業借款 認可 指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外國換銀行이 美貨 1千萬달러 이상 의 外貨資金을 償還期間 1년 초과 의 조건으로 借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資本去來의 신고절차에 따라 財政經 濟院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때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財政經 濟院長官의 申告受理 또는 變更勸告 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li> <li>- 海外證券發行 企業의 資格條件을 · 3년 累計 當期純利益 發生 企業 · 上場 後 1년 경과 企業, 海外信用 機關에 의한 일정 評點 획득 企業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li> <li>- 海外證券의 發行限度를 해당종목 發 行株式 總數의 15% 이내로 제한하 고 이를 초과한 경우 許容限度를 초 과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無決議權株 式으로 하여야 함. 財政經濟院은 國 內通貨量, 國際收支 등 巨視經濟與件 에 따라 연간 總發行限度를 설정하고 있음. 證券業協會는 同一法人 2회 이 내, 연간 3億달러, 同一系列 연간 4 億달러 등 발행 주체별 한도를 정하 여 조정하고 있음.</li> <li>- 商業借款의 導入을 公企業, SOC投 資 相關기업, 外國人投資企業( 첨단 기술), 中小企業 등에 한하여 제한적 으로 허용하고 있음.</li> </ul>

## 〈附表 1〉의 繼續

課題題目	根據規程	規 制 內 容
核心課題 2. 外貨資金 用도와 관련된 規制緩和 · 外貨貸出 資金의 用途制限  ·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制限  · 海外證券 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用途制限	- 外貨 與受信 業務 에 관한 規程 第3條  - 外國換管理規程 第11.7條  - 外國換管理規程 第10-80, 85條, 海 外證券發行規程 第4條, 外國換管 理規程에 관한 通牒	- 外貨貸出 資金의 用途는 · 施設財 輸 入資金 · 計劃造船用 機資材 輸入資 金, · 中小企業 尖端技術 導入費 및 用役費 支給, · 海外 直接投資資金, · 輸出入銀行의 協조 融資資金, · 施 設貸與會社의 施設財 輸入資金 등 6 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특히 高金利 로 借入한 外債의 早期償還을 위한 용 도가 제외되어 있어 企業의 金融費用 이 증가하고 惡性外債의 償還이 지체 되고 있음.  - 現地金融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용 도를 現地物品 購入費, 海外投資 및 海外建設 資金 등 11개 項目으로 제 한하고 있음.  - 外國換管理規程에는 海外證券發行을 통하여 調達한 資金의 용도를 · 資 本財 導入資金, · 海外投資資金 및 海外事業資金, · 3년 이상 延拂輸出 條件의 資本財 部品導入資金, · 最 新技術導入費 및 用役費, · 外債早 期償還用, · 특정 海外市場 開拓資 金 등 6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 나 海外證券發行規程에는 外債의 早 期償還用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海外證券發行으로 調達된 資金은 의 부적으로 國內銀行 海外支店에 예치 토록 규제하고 있음.  - 海外證券發行時 發行金額의 20%를 中小企業發展債券의 買入에 사용토 록 規制하고 있음.

〈附表 1〉의 繼續

	課題題目	根據規程	規 制 內 容
<p>現場性 課題</p>	<p>1. 大企業에 대한 外貨 貸出 融資 比率 限度 制限</p>	<p>— 外貨與受信業務에 관한 規程 第4條.</p>	<p>— 外貨貸出時 所要資金에 대한 融資比率을 大企業의 경우 70%, 中小企業의 경우 90%로 제한하고 있음.</p>
	<p>2. 中長期 外貨 貸出用 財源 調達 義務 比率</p>	<p>— 外貨與受信業務에 관한 細則 第5條.</p>	<p>— 3년 滿期 外貨貸出殘額의 50%를 3년 이상 中長期 海外資金으로 調達하도록 규제하고 있음.</p>
	<p>3. 外貨 리스 融資 比率 限度 規制</p>	<p>— 財政經濟院 指針</p>	<p>— 리스社를 통하여 外產施設을 貸與받는 경우 外貨貸出 融資比率을 準용하여 大企業 : 所要資金의 70%, 中小企業 : 所要資金의 100%로 제한하고 있음.</p>
	<p>4. 航空機 및 船舶의 리스 및 BBC資金 사용 限度 制限</p>	<p>— 財政經濟院 指針</p>	<p>— 年間 航空機 리스 및 船舶 BBC資金 利用限度를 각각 8億달러 10億달러로 제한하고 있음.</p>
	<p>5. 海外 直接 投資 自己 資本 調達 義務 規制</p>	<p>— 外國換管理法, 海外 直接 投資  등의 通牒</p>	<p>— 居住者는 海外 直接 投資時 投資金額의 일정비율을 自己資本으로 調達해야 하며(美貨 1億달러까지 投資金額의 10%, 미화 1億달러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1億달러 초과사업은 海外投資審議委員會에서 사업성 등 심의  필요, 系列企業群의 海外直接投資用 現地金融에 대한 母企業의 支給 保證限度는 自己資本의 100% 이내로 한정하고, 事業別 總投資金額의 50%를 초과하여 母會社가 支給保證時 自己資金 支援義務 賦課</p>
	<p>6. 現地金融의 認證, 및 事後 管理</p>	<p>— 外國換管理規程 第11-2, 3, 4條  — 外國換管理規程 第11-4條</p>	<p>— 居住者의 現地法人  등이 現地金融을 받거나 다른 現地金融의 保證을 서는 경우  당해 保證 外國換銀行 또는 指定 去來 外國換銀行長의 認定을 받아야 함.  — 分期別 現地金融  현황 事後報告</p>

〈附表 1〉의 繼續

	課題題目	根據規程	規制內容
現場性 課題	7. 居住者間 外貨決濟 對象 去來 制限	—外國換管理規程 第10-43條	—居住자와 다른 居住者間 外貨決濟 許 容對象을 外貨表示 國內信用狀 방식 에 의한 居住者間 物品供給契約을 제 결하는 경우 등 18개 項目으로 제한 하고 있음.
	8. 場外 金融 先物去來 와 先物換 去來의 反 對去來, 取消去來 에 대한 規制 및 精算差額 收受時期 에 관한 規制	—外國換管理規程 第2-54條 1項 및 13-14條	—場外先物去來의 變更·取消 및 反對 去來는 實需要去來의 金額 또는 期 間 등 去來條件 變更時에만 허용하 고 있음. 外國換銀行과 先物換去來契約을 제 결한 경우 既締結한 先物換契約을 清 算하기 위하여 外國換銀行과 反對去 來를 締結하거나 取消할 경우 精算差 額は 契約 終了時 收受해야 하는 것 으로 규제하고 있음.
	9. 金融決濟 院의 원/ 달러 換率 告示情報 의 利用 制限	—金融決濟院 指針	—원/달러 去來의 유일한 仲介機關인 金融決濟院이 銀行間 去來의 市場 價格 告示情報을 銀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로이티와 텔리레이트사 에 指針 示達
	10. 리스專業 社의 海外 資金 直接 借入에 대 한 規制	—施設貸與會社 業務 運用準則 第11條	—리스專業社의 海外借入은 償還期間이 1년을 초과하는 長期資金만 허용되 고 海外에서의 資金引出은 500萬달 러 단위로만 가능하도록 規制하고 있음.
	11. 國內銀行 의 海外店 鋪 設置 및 營業所 移轉에 관 한 規制	—外國換管理規程 第2-23, 30, 31條, 銀行法 第9條 第 27條, 金融機關監 督規程 第10條, 金融機關監督業務 施行細則 第3條 및 第10條.	—國內銀行의 國外店鋪 新設時 財政經 濟院 內認可 및 本認可 銀行監督院 新設認可 意見提示 및 認可 등의 단 계를 거쳐 年 1회 承認하고 있음. 國 外 營業所의 移轉時 銀行監督院의 인 가 要.

〈附表 1〉의 繼續

	課題題目	根據規程	規 制 內 容
現場性 課題	12. 國內銀行의 海外事業所 및 現地法人 設置와 投資金額 變更에 대한 規制	—外國換管理規程 第 2-23, 30, 31, 32條, 銀行監督院 認可業務取扱規程 및 金融機關 一般業務監督規程 第7條	—國外店鋪 및 現地法人의 設立 및 閉鎖時  소정양식 및  필요서류를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제출, 認可를 得하여야 함. 現地法人의 投資金額 變更, 有價增資 등의 경우 財政經濟院長官 및 銀行監督院長의 承認을  받아야 함.
	13. 僑胞與信에 대한 代支給時 海外送金에 대한 規制	—外國換管理規程 제6-13條 第2項 3호	—僑胞與信에 대한 國內擔保 提供 및 保證에 따른 代支給時 韓銀總裁의 許可를  받아 對外送金이  가능하도록 許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가되지 않고  있어 對外送金이  불가능함.
	14. 換錢商業務에 관한 規制	—外國換管理法施行令 第16條 第1項 3호, 外國換管理規程 第3-1條	—換錢商業務가 百貨店, 免稅店 및  소규모 호텔에 이르기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金融機關인  相互信用金庫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15. 國內銀行 海外支店의 國內 商業借款 供與 制限	—外資導入法	—外資導入法上: 國內銀行의  海外支店은  '外國人'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國內  商業借款  供與가  불가능함.